

● 제324회 ●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2023 회계연도 복지정책실 소관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1897, 1898, 1899)

2024. 06. 17.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 1897, 1898, 1899

I. 결산안 개요

1. 제안경과

가.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나. 제출일 : 2024. 05. 27.

다. 회부일 : 2024. 05. 30.

II. 결산현황

1. 세입결산

○ 예산현액 : 6,319,684 백만원

○ 징수결정액 : 6,139,325백만원

○ 실제수납액 : 6,132,498백만원

○ 미수납액 : 6,828백만원

○ 결손처분 : 해당없음

○ 다음년도 이월액 : 해당없음

○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비율은 99.9%(전년도 99.9%)임.

<표> 2023년도 복지정책실 소관 세입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

예산과목 (장-관-항-목)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불납 결손액	미수 납액	수납률 (B/A)
합 계	6,319,684	6,139,325	6,132,498	0	6,828	97.0%
일반회계	4,390,749	4,338,293	4,331,672	0	6,621	99.8%
200 세외수입	84,288	102,168	95,550	0	6,617	93.5%
210 경상적세외수입	12,604	11,902	11,260	0	642	94.6%
211 재산임대수입	801	855	798	0	57	93.3%
211-02 공유재산임대료	801	855	798	0	57	93.3%
212 사용료수입	67	63	63	0	0	100%
212-08 주차요금수입	57	63	63	0	0	100.0%
212-08 기타사용료	10	0	0	0	0	100.0%
213 수수료수입	39	42	42	0	0	100.0%
213-01 증지수입	39	42	42	0	0	100.0%
214 사업수입	11,115	9,892	9,343	0	549	94.5%
214-09 기타사업수입	11,115	9,892	9,343	0	549	94.5%
216 이자수입	582	1,050	1,013	0	36	96.6%
216-06 기타이자수입	582	1,050	1,013	0	36	96.6%
220 임시적세외수입	71,679	90,260	84,290	0	5,970	93.4%
221 재산매각수입	34	177	177	0	0	100.0%
221-04 불용품매각대금	34	177	177	0	0	100.0%
223 보조금반환수입	61,773	74,722	72,838	0	1,884	97.5%
223-01 시·도비반환금수입	54,400	63,747	61,926	0	1,821	97.1%
223-02 자체보조금반환수입	4,266	6,643	6,598	0	45	99.3%
223-03 위탁비반환수입	3,107	4,332	4,314	0	18	99.6%
224 기타수입	5,236	8,634	8,612	0	22	99.7%
224-07 그외수입	5,236	8,634	8,612	0	22	99.7%
225 지난연도수입	4,636	6,727	2,663	0	4,064	39.6%
225-01 지난연도수입	4,636	6,727	2,663	0	4,064	39.6%
230 지방행정제재·부담금	5	6	1	0	5	16.7%
233 변상금	5	6	1	0	5	16.7%
233-01 변상금	5	6	1	0	5	16.7%
300 지방교부세	785	785	785	0	0	100%
310 지방교부세	785	785	785	0	0	100%
311 지방교부세	785	785	785	0	0	100%
311-02 특별교부세	785	785	785	0	0	100%
500 보조금	4,291,932	4,221,300	4,221,300	0	0	100%
510 국고보조금등	4,291,932	4,221,300	4,221,300	0	0	100%
511 국고보조금등	4,291,932	4,221,300	4,221,300	0	0	100%
511-01 국고보조금	4,223,593	4,154,336	4,154,336	0	0	100%
511-0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56,799	56,052	56,052	0	0	100%
511-03 기금	11,540	10,913	10,913	0	0	100%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3,744	14,040	14,036	0	4	100%

예산과목 (장-관-항-목)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불납 결손액	미수 납액	수납률 (B/A)
710 보전수입등	13,744	14,040	14,036	0	4	100%
712 전년도이월금	13,724	13,724	13,724	0	0	100%
712-01 국고보조금사용잔액	13,724	13,724	13,724	0	0	100%
713 용자금원금수입	20	24	24	0	0	100%
713-01 민간용자금회수수입	20	24	24	0	0	100%
715 보조금등 반환금	0	293	289	0	4	98.6%
715-01 국고보조금등반환금	0	293	289	0	4	98.6%
의료급여특별회계	1,928,935	1,801,033	1,800,826	0	207	100%
200 세외수입	5,165	4,583	4,377	0	207	95.5%
210 경상적세외수입	1,918	694	694	0	0	100%
216 이자수입	1,918	694	694	0	0	100%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1,918	694	694	0	0	100%
220 임시적세외수입	2,871	3,189	3,189	0	0	100%
224 기타수입	2,871	3,189	3,189	0	0	100%
224-07 그외수입	2,871	3,189	3,189	0	0	100%
230 지방행정제재·부담금	376	700	493	0	207	70.4%
231 과징금	376	700	493	0	207	70.4%
231-01 과징금	376	700	493	0	207	70.4%
500보조금	952,726	889,065	889,065	0	0	100%
510국고보조금등	952,726	889,065	889,065	0	0	100%
511 국고보조금등	952,726	889,065	889,065	0	0	100%
511-01 국고보조금	952,726	889,065	889,065	0	0	100%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971,044	907,384	907,384	0	0	100%
710 보전수입등	18,319	18,319	18,319	0	0	100%
711 잉여금	18,319	18,319	18,319	0	0	100%
711-01 순세계잉여금	18,319	18,319	18,319	0	0	100%
720 내부거래	952,726	889,065	889,065	0	0	100%
721 전입금	952,726	889,065	889,065	0	0	100%
721-03 기타회계전입금	952,726	889,065	889,065	0	0	100%

2. 세출결산

- 예 산 액 : 10,001,964백만원
- 예산증감 : 33,408백만원
- 예산현액 : 10,035,372백만원
- 지 출 액 : 9,500,548백만원
- 이 월 액 : 7,281백만원

○ 보조금반납금 : 8,327백만원

○ 불용액 : 519,216백만원

-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 5.2%(전년도 1.9%)가 발생

- 불용사유별 금액

(단위 : 백만원)

불용액	원 인 별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절감액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 발생	낙찰차액	지출잔액	예비비
519,216	290,759	0	130,510	142	97,804	0

<표> 2023년도 복지정책실 세출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

예산과목 (정책/단위사업)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C)	보조금 반납금 (D)	불용액 (E=A- B-C-D)	불용률
복지정책실 합계	10,035,372	9,500,548	7,281	8,327	519,216	5.2%
일반회계 소계	8,104,571	7,903,730	7,281	8,327	185,233	2.3%
복지정책과	2,371,487	2,293,815	0	1,986	75,687	3.2%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1,355,934	1,342,270	0	1,984	11,680	0.9%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보호	1,121,495	1,117,601	0	1,223	2,671	0.2%
민간의 자율적 참여 확대를 통한 복지서비스 제공	75,549	73,626	0	0	1,924	2.5%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보호업무 등 추진	145,803	138,671	0	761	6,370	4.4%
지역중심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13,088	12,373	0	0	715	5.5%
일반예산(재무활동)	1,015,179	951,237	0	0	63,941	6.3%
내부거래지출(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1,005,562	941,869	0	0	63,693	6.3%
보전지출(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9,617	9,368	0	0	249	2.6%
행정운영경비(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374	307	0	2	66	17.6%

예산과목 (정책/단위사업)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C)	보조금 반납금 (D)	불용액 (E=A- B-C-D)	불용률
	기본경비	264	200	0	0	65	24.6%
	인력운영비(의료급여관리사)	110	107	0	2	1	0.9%
안심소득추진과		1,285	1,082	0	0	203	15.8%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로 미래사회복지 구현	1,266	1,063	0	0	203	16.0%
	새로운 소득보장제도 정립	1,266	1,063	0	0	203	16.0%
	행정운영경비(복지정책실 안심소득추진과)	19	19	0	0	0	0.0%
	기본경비	19	19	0	0	0	0.0%
안심돌봄복지과		314,746	312,745	0	96	1,905	0.6%
	민간복지협력사업의 구축 및 복지사업대발굴지원	313,004	311,003	0	96	1,905	0.6%
	민간의 자율적 참여 확대를 통한 복지서비스 제공	3,584	3,559	0	0	25	0.7%
	사회취약계층 복지 강화	105,775	104,941	0	0	834	0.8%
	지역사회복지사업의 구축 및 복지사업대발굴지원 등	203,645	202,502	0	96	1,046	0.5%
	재무활동(복지정책실 안심돌봄복지과)	1,701	1,701	0	0	0	0.0%
	보전지출(복지정책실 안심돌봄복지과)	1,701	1,701	0	0	0	0.0%
	행정운영경비(복지정책실 안심돌봄복지과)	41	41	0	0	0	0.0%
	기본경비	41	41	0	0	0	0.0%
어르신복지과		3,747,154	3,664,152	2,910	120	79,971	2.1%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	3,741,137	3,658,137	2,910	120	79,969	2.1%
	독거·재가어르신 종합서비스 확대	65,061	64,667	0	2	392	0.6%
	어르신 생활안정지원 및 어르신단체 육성 등	3,046,569	2,969,456	0	0	77,114	2.5%
	어르신 여가복지 지원	300,341	298,137	853	0	1,351	0.4%
	어르신 요양 인프라 구축	285,417	282,329	1,858	118	1,112	0.4%
	장사시설의 현대화 및 운영 내실화	43,749	43,549	200	0	0	0.0%
	재무활동	5,951	5,951	0	0	0	0.0%
	보전지출(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5,951	5,951	0	0	0	0.0%
	행정운영경비(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65	64	0	0	1	1.5%
	기본경비	65	64	0	0	1	1.5%
장애인복지정책과		231,414	217,184	87	1,230	12,913	5.6%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조성	227,812	213,638	87	1,230	12,857	5.6%

예산과목 (정책/단위사업)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C)	보조금 반납금 (D)	불용액 (E=A- B-C-D)	불용률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223,869	209,717	87	1,220	12,844	5.7%
	장애인단체 사회참여 지원	3,184	3,181	0	0	2	0.1%
	장애인복지시설 확충	759	740	0	10	10	1.3%
	일반예산(재무활동)	3,556	3,501	0	0	55	1.5%
	내부거래	122	93	0	0	28	23.0%
	보전지출(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3,434	3,408	0	0	26	0.8%
	행정운영경비(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46	44	0	0	2	4.3%
	기본경비	46	44	0	0	2	4.3%
장애인자립지원과		1,193,940	1,176,635	4,283	4,049	8,972	0.8%
	장애인자립기반 구축	1,183,856	1,166,551	4,283	4,049	8,972	0.8%
	장애인 이동불편 해소	19,119	18,978	0	0	141	0.7%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1,039,880	1,029,603	0	3,342	6,936	0.7%
	장애인 취업지원 확대	103,955	102,211	0	28	1,716	1.7%
	장애인복지시설 확충 지원	20,902	15,759	4,283	680	180	0.9%
	재무활동(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10,040	10,040	0	0	0	0.0%
	내부거래지출	6,498	6,498	0	0	0	0.0%
	보전지출(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3,542	3,542	0	0	0	0.0%
	행정운영경비(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44	44	0	0	0	0.0%
	기본경비	44	44	0	0	0	0.0%
자활지원과		244,545	238,117	0	846	5,582	2.3%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	72,578	67,164	0	13	5,401	7.4%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지원	25,970	24,137	0	13	1,821	7.0%
	노숙인 자활지원	46,608	43,027	0	0	3,580	7.7%
	저소득시민 자활지원	171,934	170,921	0	833	180	0.1%
	저소득시민 자활사업 운영지원	171,934	170,921	0	833	180	0.1%
	일반예산(재무활동)	1	0	0	0	1	100.0%
	보전지출(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1	0	0	0	1	100.0%
	행정운영경비(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32	32	0	0	0	0.0%
	기본경비	32	32	0	0	0	0.0%

예산과목 (정책/단위사업)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C)	보조금 반납금 (D)	불용액 (E=A- B-C-D)	불용률
균형발전특별회계 소계	1,866	1,866	0	0	0	0.0%
장애인자립지원과	1,866	1,866	0	0	0	0.0%
장애인자립기반 구축	1,866	1,866	0	0	0	0.0%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지원(군특)	1,866	1,866	0	0	0	0.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소계	1,928,935	1,594,952	0	0	333,983	17.3%
복지정책과	1,928,935	1,594,952	0	0	333,983	17.3%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1,928,823	1,594,840	0	0	333,983	17.3%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보호	1,928,823	1,594,840	0	0	333,983	17.3%
일반예산(재무활동)	112	112	0	0	0	0.0%
보전지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12	112	0	0	0	0.0%

가. 예산 이용 : 해당없음

나. 예산 전용 : 총 31건, 4,132백만원

다. 예산 이체 : 해당없음

라. 예산의 변경사용 : 총 34건, 133,253백만원

마. 예비비 사용 : 총 39건, 11,157백만원

바.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총 9건, 7,281백만원

사. 국고보조금 집행

(단위 :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예산액)	보조금수령액 ①	집행액 ②	이월액 ③	집행잔액 ④=①-②-③
합계	5,258,552	5,124,371	5,018,814	247	105,490
당해(소계)	5,256,104	5,121,923	5,017,564	0	104,540
일반회계	4,291,932	4,221,300	4,212,950	0	8,531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952,615	889,065	794,353	0	94,712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11,557	11,557	10,261	0	1,297
명시이월(소계)	1,428	1,428	231	247	950
일반회계	1,428	1,428	231	247	950
사고이월(소계)	1,020	1,020	1,020	0	0
일반회계	1,020	1,020	1,020	0	0

3. 기금결산

(단위 : 백만원)

기금명	전년도말 현재액 ①	2023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⑤=①+②
		계 ②=③-④	조성액 ③	사용액 ④	
계	173,789	11,790	217,826	206,036	185,579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12,474	△429	638	1,067	12,045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23,982	△1,410	3,483	4,894	22,572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8,307	1,547	2,458	911	9,853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129,025	12,083	211,247	199,164	141,108

4. 채권현재액 : 1,000백만원

5. 채무결산 : 해당없음

6.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 2023년도말 실국별 관리 공유재산

- 토지 6,049,927 m^2 1,609,810백만원,
 - 건물 354,138 m^2 665,649백만원,
 - 기타 36건 4,897백만원,
- 총 2,280,356백만원 상당의 금액

<표> 2023년도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단위:백만원)

구분	2022년도말 보유현황	당해년도 증감액		2023년도말 보유현황	
		증가	감소		
합계	2,585,165	70,228	375,036	2,280,356	
행정 재산	계	2,583,394	70,225	375,036	2,278,582
	공용재산	1,634,261	-	375,036	1,259,225
	공공용재산	941,520	69,912	-	1,011,432
	기업용재산	7,612	313	-	7,925
	보존재산	-	-	-	-
일반재산	1,771	3	-	1,774	

7. 물품 증감 및 현재액

○ 2023년도 말 복지정책실 소관 관리 정수물품은 수량 35개, 현재액 50백만원

<표> 2023년도 정수물품증감 및 현재액

(단위:수량-개, 금액-백만원)

구분	2022년도말 보유현황		당해년도 증감액						2023년도말 보유현황
			증가			감소			
			구매	관리전환	소계	매각	관리전환	소계	
합계	수량	33	1	1	2	-	-	-	35
	금액	47	1	2	3	-	-	-	50
일반회계	수량	33	1	1	2	-	-	-	35
	금액	47	1	2	3	-	-	-	50

Ⅲ.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주병준)

1 세입 결산 검토

가. 세입결산 총괄 개요

- 2023 회계연도 복지정책실 소관 세입 예산현액은 6조 3,196억 8천 4백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6조 1,393억 2천 5백만원임. 징수결정액 가운데 실제수납액은 6조 1,324억 9천 8백만원이며, 미수납액은 68억 2천 8백만원으로, 수납률은 97%로 나타남.

<표> 2023년도 복지정책실 소관 세입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

예산과목 (장-관-항-목)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불납 결손액	미수 납액	수납률 (B/A)
합 계	6,319,684	6,139,325	6,132,498	0	6,828	97.0%
일반회계	4,390,749	4,338,293	4,331,672	0	6,621	99.8%
200 세외수입	84,288	102,168	95,550	0	6,617	93.5
210 경상적세외수입	12,604	11,902	11,260	0	642	94.6%
211 재산임대수입	67	63	63	0	0	100%
211-02 공유재산임대료	57	63	63	0	0	100%
212 사용료수입	10	0	0	0	0	-
212-08 주차요금수입	39	42	42	0	0	100%
212-08 기타사용료	39	42	42	0	0	100%
213 수수료수입	11,115	9,892	9,343	0	549	94.5%
213-01 증지수입	11,115	9,892	9,343	0	549	94.5%
214 사업수입	582	1,050	1,013	0	36	96.5%
214-09 기타사업수입	582	1,050	1,013	0	36	96.5%
216 이자수입	34	177	177	0	0	100%
216-06 기타이자수입	34	177	177	0	0	100%
220 임시적세외수입	71,679	90,260	84,290	0	5,970	93.4%
221 재산매각수입	34	177	177	0	0	100%
221-04 불용품매각대금	34	177	177	0	0	100%
223 보조금반환수입	61,773	74,722	72,838	0	1,884	97.5%

예산과목 (장-관-항-목)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불납 결손액	미수 납액	수납률 (B/A)
	223-01 시·도비반환금수입	54,400	63,747	61,926	0	1,821	97.1%
	223-02 자체보조금반환수입	4,266	6,643	6,598	0	45	99.3%
	223-03 위탁비반환수입	3,107	4,332	4,314	0	18	99.6%
	224 기타수입	5,236	8,634	8,612	0	22	99.7%
	224-07 그외수입	5,236	8,634	8,612	0	22	99.7%
	225 지난연도수입	4,636	6,727	2,663	0	4,064	39.6%
	225-01 지난연도수입	4,636	6,727	2,663	0	4,064	39.6%
	230 지방행정제재·부담금	5	6	1	0	5	16.7%
	233 변상금	5	6	1	0	5	16.7%
	233-01 변상금	5	6	1	0	5	16.7%
300	지방교부세	785	785	785	0	0	100%
	310 지방교부세	785	785	785	0	0	100%
	311 지방교부세	785	785	785	0	0	100%
	311-02 특별교부세	785	785	785	0	0	100%
500	보조금	4,291,932	4,221,300	4,221,300	0	0	100%
	510 국고보조금등	4,291,932	4,221,300	4,221,300	0	0	100%
	511 국고보조금등	4,291,932	4,221,300	4,221,300	0	0	100%
	511-01 국고보조금	4,223,593	4,154,336	4,154,336	0	0	100%
	511-0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56,799	56,052	56,052	0	0	100%
	511-03 기금	11,540	10,913	10,913	0	0	100%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3,744	14,040	14,036	0	4	100%
	710 보전수입등	13,744	14,040	14,036	0	4	100%
	712 전년도이월금	13,724	13,724	13,724	0	0	100%
	712-01 국고보조금사용잔액	13,724	13,724	13,724	0	0	100%
	713 융자금원금수입	20	24	24	0	0	100%
	713-01 민간융자금회수수입	20	24	24	0	0	100%
	715 보조금등 반환금	0	293	289	0	4	98.6%
	715-01 국고보조금등반환금	0	293	289	0	4	98.6%
	의료급여특별회계	1,928,935	1,801,033	1,800,826	0	207	100%
200	세외수입	5,165	4,583	4,377	0	207	95.5%
	210 경상적세외수입	1,918	694	694	0	0	100%
	216 이자수입	1,918	694	694	0	0	100%
	216-01 공공예금이자 수입	1,918	694	694	0	0	100%
	220 임시적세외수입	2,871	3,189	3,189	0	0	100%
	224 기타수입	2,871	3,189	3,189	0	0	100%
	224-07 그외수입	2,871	3,189	3,189	0	0	100%
	230 지방행정제재·부담금	376	700	493	0	207	70.4%
	231 과징금	376	700	493	0	207	70.4%

예산과목 (장-관-항-목)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불납 결손액	미수 납액	수납률 (B/A)
	231-01 과징금	376	700	493	0	207	70.4%
500보조금		952,726	889,065	889,065	0	0	100%
	510국고보조금등	952,726	889,065	889,065	0	0	100%
	511 국고보조금등	952,726	889,065	889,065	0	0	100%
	511-01 국고보조금	952,726	889,065	889,065	0	0	100%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971,044	907,384	907,384	0	0	100%
	710 보전수입등	18,319	18,319	18,319	0	0	100%
	711 잉여금	18,319	18,319	18,319	0	0	100%
	711-01 순세계잉여금	18,319	18,319	18,319	0	0	100%
720 내부거래		952,726	889,065	889,065	0	0	100%
	721 전입금	952,726	889,065	889,065	0	0	100%
	721-03 기타회계전입금	952,726	889,065	889,065	0	0	100%

- 최근 3년간 복지정책실의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지속적으로 수납액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복지정책실 최근 3년간 일반회계 세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실제수납액 (B)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A-B)	수납률 (B/A)
2023	4,390,749	4,338,293	4,331,672	0	6,621	99.8
2022	4,161,352	4,162,446	4,154,905	0	7,540	99.8
2021	3,736,712	3,787,454	3,774,204	0	13,249	99.7

- 복지정책실 과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전체 세입예산이 가장 많은 과는 어르신복지과로 총 세입예산액은 2조 8,772억 5백만원이며(수납률 99.9%), 수납률이 가장 저조한 과는 장애인복지정책과로 전체 징수결정액 557억 5천3백만원 가운데 12억 7천7백만원(수납률 97.7%)를

미수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2023년도 복지정책실 일반회계 세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실·국·과명)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 (A)	수납액 (B)	불납 결손액 (C)	미수납액 (A-B-C)	수납률 (B/A)
복지정책실	4,349,206	4,390,749	4,338,293	4,331,672	0	6,621	99.8%
복지정책과	780,831	779,978	781,901	781,810	0	91	100.0%
안심돌봄복지과	49,856	49,952	43,969	43,603	0	366	99.2%
어르신복지과	2,877,205	2,885,808	2,817,672	2,813,788	0	3,884	99.9%
장애인복지정책과	50,211	53,509	55,753	54,477	0	1,277	97.7%
장애인자립지원과	472,602	496,291	514,815	513,899	0	916	99.8%
지활지원과	118,501	125,211	124,182	124,094	0	88	99.9%

나. 세입예산 집행 철저 필요

- 복지정책실 소관 23년도 세입예산 중 예산액 대비 실제수납액 비율이 과다하게 차이가 나는 세입예산 현황은 다음의 표와 같음.

<표> 일반회계 예산액 대비 실제수납액상 과다 차이발생(20%) 과목별 현황

(단위: 천원, %)

예산과목	예산액 (A)	징수 결정액	실제수납 액(B)	과부족액 (B-A)	과부족 상세사유	차액비 율
212-09 기타사용료	9,796	111	111	△9,685	◦ '23년 사용료(송전선로 통과 토지점용료)를 '22년 12월에 선납하여 '23년 수납액 없음	△98.9%
216-03 기타이자수입	582,427	1,049,562	1,013,393	430,966	◦ 정산을 통해 정확한 금액 산정 이전 편성하여 실제 수납액과 차이 발생	74.0%

예산과목	예산액 (A)	징수 결정액	실제수납 액(B)	과부족액 (B-A)	과부족 상세사유	차액비 율
221-04 불용품 매각대금	33,676	176,575	176,575	142,89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직개편에 따른(인생이모작과 부서 폐지) 불용품매각대금 발생 내구연한경과또는고장으로인하여 예상보다불용품매각대금수입발생 증가(143백만원)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차량30대, 장애인주간보호시설차량1대) 	424.3%
223-02 자체보조금등 반환수입	4,266,149	6,643,308	6,598,472	2,332,3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조금 정산을 통해 정확한 금액 산정 이전 편성하여 실제 수납액과 차이 발생 	54.7%
223-03 위탁비 반환수입	3,106,987	4,331,852	4,314,003	1,207,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조금 정산을 통해 정확한 금액 산정 이전 편성하여 실제 수납액과 차이 발생 	38.8%
224-07 그외수입	5,236,105	8,634,109	8,611,670	3,375,565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결산액 평균치 등으로 예산 편성하였으나 실제 수납액과 차이 발생 	64.5%
225-01 지난년도수입	4,635,770	6,726,862	2,663,189	△1,972,58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난년도 보조금 잔액, 발생이자 미반납액 등으로 자치구 추정 미편성 등으로 부족 수납 	△42.6%
233-01 변상금	5,463	5,788	954	△4,5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대상 3건 중 1건 미납으로, 독촉고지 발급 등을 통한 납부 독려 중 	△82.5%
715-01 국고보조금등 반환금	0	292,587	288,780	288,7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2년 장애인 거주시설, 피해장애인 쉼터 등 이용자, 직원 변동 등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에 따른 징수액 발생 	100%

- 세입은 계속성과 안전성이 확보되고 회계연도마다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조달되는 경상적 세외수입과 규모는 크나 수입원이 일회성에 그치는 수입 또는 지방자치단체 내부에서 단순한 자원 또는 회계 조작 상의 수입 등을 포함한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복지정책실은 임시적 세외수입 가운데 지난년도 수입에서 과부족액이 다량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1,972,581천원, △42.6%). 지난년도 수입은 당해연도 이전에 부과한 세외수입 중 당해연도에 징수한 세외수입으로, 복지정책실 '23년도 지난년도 수입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음.

<표> 2023 회계연도 복지정책실 지난연도 수입 상세 내역

(단위: 원)

부서	예산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미수납액	미수납내역
복지정책과	245,119,000	68,759,030	52,530,130	16,228,9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이지수입 263천원 ◦ 기타잡수입 2,025천원 ◦ 시비보조금등반환수입 13,942천원
안심돌봄복지과	1,110,009,000	701,257,250	696,653,670	4,603,5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이지수입 4,315천원 ◦ 시비보조금등반환수입 288천원
어르신복지과	2,150,889,000	3,507,593,390	923,767,690	2,583,825,7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립묘지등사용료 2,245,774천원 ◦ 기타사업수입 211,057천원 ◦ 사유재산변상금 42,907천원 ◦ 시비보조금등반환수입 49,849천원 ◦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5,391천원 ◦ 기타잡수입 16,587천원
장애인복지정책과	130,257,000	1,459,355,960	351,175,960	1,108,18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비보조금등반환수입 1,104,302천원 ◦ 기타잡수입 409천원 ◦ 기타이지수입 434천원등
장애인자립지원과	713,667,000	709,671,510	397,000,500	312,671,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이지수입 54,050천원 ◦ 기타잡수입 381천원 ◦ 시비보조금등반환수입 246,902천원

부서	예산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미수납액	미수납내역
					◦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11,337천원
자활지원과	285,829,000	280,224,550	242,061,230	38,163,320	◦ 기타이자수입 : 5,373천원 ◦ 시비보조금등반환수입:2,000천원 ◦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29,479천원등 ◦ 기타잡수입:1,312천원

- 이 가운데 미수납액이 높은 장애인복지정책과의 경우, 거주시설 인강원 소속직원이 타 보호작업장에 근무하며 보조금(인건비)을 부정수급한 것이 드러나, 14년 최초로 보조금 환수 처분 통지를 하였음.
 - 총 환수대상은 7명으로 목적 외 사용에 따른 환수 처분액이 1,027,456천원인 것으로 나타남. 해당 금액에 대한 납부는 최초 처분 이후 지속적으로 지연되고 있어 집행기관에서 환수를 위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임.
 - 어르신복지과의 미수납액은 시립묘지 사용료에서 발생한 미수납액이 2,245,774천원으로 봉안 및 분묘관리비, 재사용료에서 장기체납분(최초 고지연도에서 1년이상 체납) 징수율이 낮은 것이 주된 발생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음.
- 당해연도 부과분에 대한 적극적 징수를 통해 현년도 부과분에 대한 체납액을 줄이는 한편, 과년도 체납분(지난년도 수입)의 적극적 관리가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발간한 「지방세외수입 징수체계 정비에 따른 세입영향 및 시사점」 연구 보고서에 따르

면 현년도 부과분에 대한 체납액보다 과년도 부과분의 체납액 규모가 약 2.6배 정도로 나타나고 있어, 일단 현년도 부과분에 대한 징수가 이루어지지 못해 지난년도 수입으로 이관되고 나면 그 부과·징수가 매우 어려운 것을 알 수 있음.¹⁾

- 세외수입의 편성에 있어 세입규모를 추계한 예산액과 회계연도 내 실제여건이 반영된 징수결정액 격차가 최소가 될 경우 예산액 상의 추계가 보다 더 면밀한 것이라 할 것이며, 세입의 정확한 추계는 결국 유용한 세출 재원의 확보로 이어지므로 향후 예산 편성 및 집행 단계에서 집행기관의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 하겠음.

다. 국고보조금의 과소(대) 또는 미교부 사례

- 국고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교부받는 이전재원 중 하나로 국가와 지방이 재원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추진됨.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에서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금은 2021년 기준 전체의 64.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과거 10년간 연평균 13.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²⁾
 - '21년 기준 국고보조금 규모 상위 10대 사업에는 기초연금, 의료급여경상보조, 생계급여, 주거급여 지원, 장애인활동 지원 등 복지정책실에서 수행하는 사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
- 중앙정부에서 국고보조금의 규모를 일방적으로 변경할 경우, 정해진 매칭비율에 의한 서울시 예산의 변경은 불가피하다고 하겠으나, 이로 인해 사업의 예측가능성, 안정성 및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뢰성에 영향을 미칠 뿐만

1) 오나래(2022). 『지방세외수입 징수체계 정비에 따른 세입영향 및 시사점』. 한국지방세연구원.

2) 김우림(2021). 『사회복지 분야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아니라 서울시의회의 예산 심의권에도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

-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의 사장을 막고 재원이 적시에 사용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편의적이고 일방적인 국고보조금 변경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음.

○ 복지정책실 23년도 세입예산 가운데 국고보조금의 과교부 및 미교부 사례는 다음 표와 같음.

<표> 23년도 복지정책실 국고보조금의 과소 및 미교부 사유

(단위: 천원)

연번	부서	사업명	총사업비(예산액)			보조금수령(확보)액			차액	미교부 및 과소교부 사유
			계	국비	시비	계	국비	시비		
1	복지정책과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생계급여	1,070,982,822	730,225,000	340,757,822	1,069,982,822	729,225,000	340,757,822	△1,000,000	보건복지부 국비조정에 따른 국비보조금 일부 감액(변경내시)
2	복지정책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사업(국비)	995,660	503,830	491,830	944,222	452,392	491,830	△51,438	서울 배정인원 감원(복지부, '23.6.28)
3	안심돌봄복지과	간급복지지원사업	42,340,500	28,227,000	14,113,500	41,740,500	27,627,000	14,113,500	△600,000	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23.7.22.)
4	안심돌봄복지과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208,000	130,000	78,000	207,980	129,980	78,000	△20	자치구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에 따른 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 교부(2023.1.17.)
5	어르신복지과	기초연금 지급	3,043,664,427	2,713,319,279	330,345,148	2,974,943,314	2,644,598,166	330,345,148	△68,721,113	보건복지부 국비(△687억원) 감액된 변경내시 통보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93(2023.10.13.)

연 번	부서	사업명	총사업비(예산액)			보조금수령(확보)액			차액	미교부 및 과소교부 사유
			계	국비	시비	계	국비	시비		
6	장애인복지정 책과	탈시설 장애인 자립 정책 지원 시범사업 (보건복지부)	389,216	389,216	0	0	0	0	△389,216	보건복지부 통계목 변경(국고보조금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따라 별도사업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신설하여 해당사업으로 국고보조금 수령 후 추진
7	장애인복지정 책과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사업	455,760	227,880	227,880	438,760	210,880	227,880	△17,000	보건복지부 수요조사에 따른 국고보조금 내시 변경
8	장애인복지정 책과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사업 운영지원(지역)	151,200	75,600	75,600	127,660	52,060	75,600	△23,540	국고보조금 내시 변경
9	장애인복지정 책과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사업 운영	832,000	416,000	416,000	610,829	194,829	416,000	△221,171	국고보조금 내시 변경
10	장애인자립지 원과	사청각장애인학습지 원센터 운영	8,888,000	8,888,000	0	8,209,000	8,209,000	0	△679,000	실집행액에 따른 사업비 조정
11	장애인자립지 원과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가능보강	647,512	133,756	513,756	627,008	113,252	513,756	△20,504	확정내시 후 국고보조금 미교부
12	자활지원과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10,937,512	6,513,771	4,423,741	10,875,222	6,451,481	4,423,741	△62,290	사업 추진에 따른 실 집행액 등을 고려한 국고보조금 교부액 조정(변경내시)
13	복지정책과	의료급여사업	1,907,072,063	941,850,378	965,221,685	1,756,379,620	878,189,810	878,189,810	△63,660,568	의료급여기금 운용 상황등을 고려하여 변경내시

2 세출 결산 검토

가. 세출결산 총괄 개요

- 복지정책실 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8조 1,045억 7천 1백만원이고, 이 중 7조 9,037억 3천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852억 3천3백만원(불용률 2.5%)으로 나타남.
- 최근 3년간 복지정책실 일반회계의 경우 예산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출액도 매년 증가하고 있음. 집행률은 98%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복지정책실 최근 3년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반 납금	불용액 (B)	불용액 비율 (B/A)
2023년도	8,071,163	8,104,571	7,903,730	7,281	8,327	185,233	2.3
2022년도	7,836,944	7,856,988	7,711,568	22,251	13,719	109,450	1.4
2021년도	7,104,410	7,149,106	7,042,330	15,113	18,489	73,174	1.0

- 복지정책실에서 23년도 세출예산 집행률이 가장 높은 과는 안심돌봄복지과로 전체 예산 3,147억 4천 6백만원 가운데 3,127억 4천 5백만원을 집행해 99.4%의 집행률을 보였고, 집행률이 가장 낮은 과는 안심소득추진과로 전체 예산 12억 8천5백만원 가운데 10억 8천2백만원을 집행해 84.2%의 집행률을 보임.

<표> 2023년도 복지정책실 일반회계 세출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실·국·과명)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보조금 반납액 (D)	집행잔액 (A-B-C- D)	집행률 (B/A)
복지정책실	8,071,163	8,104,571	7,903,730	7,281	8,327	185,233	97.5%
복지정책과	2,370,458	2,371,487	2,293,815	0	1,986	75,687	96.7%
안심소득추진과	1,285	1,285	1,082	0	0	203	84.2%
안심돌봄복지과	314,166	314,746	312,745	0	96	1,905	99.4%
어르신복지과	3,741,035	3,747,154	3,664,152	2,910	120	79,971	97.8%
장애인복지정책과	216,417	231,414	217,184	87	1,230	12,913	93.9%
장애인자립지원과	1,183,553	1,193,940	1,176,635	4,283	4,049	8,972	98.6%
자활지원과	244,248	244,545	238,117	0	846	5,582	97.4%

- 불용률이 가장 높은 안심소득추진과의 경우, 안심소득 시범사업 추진체계 구축 운영 사업에서 1억 1,045만원(33%)의 불용액이 발생함. 이는 정책토론회 개최 및 연구자문단 및 소득보장정책자문단의 참석수당 집행률이 저조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남.
- 복지정책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와 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루어져 있음.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의료급여법」 제25조에 따라 설치된 급여기금으로, 「서울특별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세입, 세출항목이 정해져 있으며, 동 조례에 따르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세출은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비용, 급여비용의 대불에 드는 비용, 업무위탁에 드는 비용 등으로 규정되어 있음.

- 23년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1조 9,289억 3천5백만원 가운데 1조 5,949억 5천2백만원을 집행해 82.7%의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음. 이는 예산편성 시 국비 내시액보다 실제 국비 교부액이 감소해 차액분이 불용된 것임.
- 균형발전특별회계는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복지정책실 23년도 균형발전특별회계는 구립강동장애인복지관 건립 1개 사업에 총 18억 6천6백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전액 집행이 끝난 것으로 나타남.
- 구립강동장애인복지관 건립사업은 2021년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26억 1천2백만원(시비 42억 3천1백만원, 구비 250억 7천1백만원, 특교 33억 1천만원)으로, 시비 예산편성은 2023년으로 종료되었고, 현재 구비로 예산편성해 공사가 진행 중이며, 2024년 7월 준공 예정에 있음.

<표> 2023년도 복지정책실 특별회계 세출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실·국·과명)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C)	보조금 반납액 (D)	집행 잔액 (A-B-C-D)	집행률 (B/A)
복 지 정 책 실	1,930,801	1,930,801	1,596,818	0	0	333,983	82.7%
복지정책과	1,928,935	1,928,935	1,594,952	0	0	333,983	82.7%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928,935	1,928,935	1,594,952	0	0	333,983	82.7%
장애인자립지원과	1,866	1,866	1,866	0	0	0	100.0%
균형발전특별회계	1,866	1,866	1,866	0	0	0	100.0%

<표> 복지정책실 최근 3년간 특별회계 세출 결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반 납금	불용액 (B)	불용액 비율 (B/A)
2023년도	1,930,801	1,930,801	1,596,818	0	0	333,983	20.9
2022년도	1,754,156	1,754,242	1,685,822	0	0	68,421	4.1
2021년도	1,680,577	1,684,359	1,672,422	646	0	11,291	0.7

나. 예산의 변경사용

1) '23 회계연도 예산의 변경(이용·전용·변경사용·이체)

- 예산변경은 예측하지 못한 이유로 신속적인 예산운용이 필요한 상황에 대비해 지방재정법 제47조³⁾에서 규정하는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원칙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는 제도임.
- 복지정책실 2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이용·전용·이체 내역은 다음과 같음.

<표> 2023년도 복지정책실 일반회계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현황

(단위: 백만원)

	이용	전용	변경	이체
건수	-	30	33	-
승인금액	-	3,195	133,031	-

3) 「지방재정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표> 2023년도 복지정책실 특별회계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이용	전용	변경	이체
전수	-	1	1	-
승인금액	-	937	222	-

- 일반회계 예산전용은 총 30건(31억 9천5백만원), 예산변경은 총 33건(1,330억 3천1백만원)으로 나타남.
- 특별회계는 예산전용 총 1건(9억 3천7백만원), 예산변경 총 1건(2억 2천2백만원) 으로 나타남.

- 예산이용은 입법과목인 정책사업 간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복지정책실 '23년도 결산안에는 해당 사항이 없음.
- 예산이체는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2항4)에 따라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 조례, 제정, 개폐 시 예산을 변경 사용하는 것으로 복지정책실 '23년도 결산안에는 해당사항이 없음.

가) 예산의 전용

- 예산전용은 행정과목인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예산을 변경 사용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49조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의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4) 「지방자치법」 47조의2(예산의 이용·이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관계 기관 사이에 직무권한이나 그 밖의 사항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그 예산을 상호 이체(移替)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49조(예산의 전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다.

1.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2.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전용을 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전용 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서에 명시하고,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

○ ‘23년도 복지정책실 예산 전용 건수와 금액은 총 31건, 41억 3천2백만원으로 전년도 10건, 4억 1천 9백만원 에 비해 건수와 금액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이 가운데 14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⁵⁾에 의해 공유재산은 서울시 명의의 손해보험 가입이 필요함에도 수탁기관 명의 보험가입 사례가 존재한다는 서울시의회의 ‘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위해 ‘23년 ‘민간위탁금’ 및 ‘공기관 등에 대한 정상적 위탁사업비’를 ‘공공운영비’로 전용하여 서울시 명의의 보험계약을 추진한 건임.

5)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손해보험 및 공제계약)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손해보험이나 공제(共濟)에 가입하여야 한다.

1. 건물, 선박
2. 공유재산 대장에 기록된 가격이 1억원 이상인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작물·기계 및 기구

②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유상(有償)·무상(無償) 여부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표> 2023년도 복지정책실 예산 전용내역

(단위: 천원)

연 번	과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 승인일자	전용후 예산집행상 황		사유
	조직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집행액	집행률	
1	복지정책과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266,180	126,000	0	2023-07-26	120,662	86%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1754('23.7.3.)호에 따른 청년마음건강 바우처지원사업 국비 증액 변경내시에 따라 매 칭시비 확보를 위해 예산 전용
		청년마음건강 바우처 지원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 금	1,168,500	0	126,000		1,472,505	95%	
2	복지정책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사업(국비)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1,007,660	12,000	0	2023-09-18	904,784	91%	복 지 정 책 과 - 2 1 5 4 1 (' 2 3 . 9 . 1 5 .) 호 에 따 라 사 회 복지법인 전수조사 실시를 위 한 기간제근로자 긴급채용을 위해 예산 전용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지원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 수	53,850	0	12,000		61,023	93%	

연 번	과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 승인일자	전용후 예산집행상 황		사유
	조직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집행액	집행률	
3	복지정책과	서울시복지재단 출연금	306-01 출연금	76,022,567	900,000	0	2023-12-18	73,267,352	98%	서울형 기초보장 수급가구 증 가로 12월 생계급여액 부족 액 확보를 위해 예산 전용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운영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 (취약계층, 지방재 원)	17,648,249	0	900,000		18,143,256	98%	
4	복지정책과	의료급여사업	308-11 공기관등에대한경 상적위탁사업비	1,908,008,655	936,592	0	2023-12-26	1,573,091,560	82%	보건복지부 기초의료 보장과 -7234(2023.12.13) 국비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건강보 험공단 위탁수수료 확보를 위 해 예산전용
		의료급여사업	201-01 사무관리비	2,488,648	0	936,592		3,425,239	100%	
5	안심돌봄복지과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307-05 민간위탁금	1,383,410	1,213	0	2023-05-02	1,373,842	99%	민간위탁시설 공유재산 손해보험(공제)가입을 위해 예산 전용 (안심돌봄복지과-7529,2023. 4.28.)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201-02 공공운영비	0	0	1,213		1,212	100%	

연 번	과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 승인일자	전용후 예산집행상 황		사유
	조직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집행액	집행률	
6	안심돌봄복지과	서울 돌봄 SOS 센터 설치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250,000	110,000	0	2023-12-11	130,218	93%	돌봄SOS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라 사업비 조기 소진을 방지 하기 위한 예산 전용(안심돌봄 복지과 - 20177, 2023.12.7.)
		서울 돌봄 SOS 센터 설치 운영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2,911,900	0	110,000		32,972,900	100%	
7	어르신복지과	어르신주거복지시설 운영(양로)(전환사업)	307-05 민간위탁금	3,155,344	495	0	2023-04-26	2,948,963	93%	조직담당관 -3465('23.3.29.)호에 따라 민간위탁시설 공유재산 손해보험(공제) 서울시 가입을 위해 예산 전용
		어르신주거복지시설 운영(양로)(전환사업)	201-02 공공운영비	0	0	495		346	70%	
8	어르신복지과	어르신의료복지시설 운영(요양)	307-05 민간위탁금	3,155,535	18,400	0	2023-04-26	3,019,664	92%	시립노인요양시설 9개소 재해 복구공제(보험)가입
		어르신의료복지시설 운영(요양)	201-02 공공운영비	0	0	18,400		17,811	97%	

연 번	과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 승인일자	전용후 예산집행상 황		사유
	조직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집행액	집행률	
9	어르신복지과	시립장사시설 위탁 운영	308-11 공기관등에대한경 상적위탁사업비	29,694,649	585	0	2023-04-26	29,494,064	99%	공유재산 손해보험(공제) 가입 관련 예산 전용(어르신복지과 -10923, 2023.4.21)
		시립장사시설 위탁 운영	201-02 공공운영비	0	0	585		585	100%	
10	어르신복지과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307-05 민간위탁금	34,848,845	1,523	0	2023-04-26	34,844,270	100%	민간위탁시설 공유재산 손해보 험(공제) 서울시 가입을 위하 여 예산전용(조직담당관 -3465)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201-02 공공운영비	0	0	1,523		1,522	100%	
11	장애인복지센터	장애인단기거주시 설 운영	307-05 민간위탁금	919,255	122	0	2023-04-24	919,533,000	100%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 령 제4조 및 서울시 행정사무 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른 민간위탁 시설 2개소 공유재 산 손해보험(공제) 가입비 확 보
		장애인단기거주시 설 운영	201-02 공공운영비	0	0	122		121,930	100%	

연 번	과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 승인일자	전용후 예산집행상 황		사유
	조직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집행액	집행률	
12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307-05 민간위탁금	6,368,355	700	0	2023-04-24	5,713,965,540	87%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 및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른 민간위탁 시설 1개소 공유재산 손해보험(공제) 가입비 확보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201-02 공공운영비	0	0	700		1,092,860	98%	
13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공동생활가 정 운영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2,753,693	13,438	0	2023-10-04	9,694,345,898	94%	장애인복지정책과-15631('23.9.26.)호에 따라 공공요금 인상분, 여비 등 운영비 부족분 예산 전용
		인권침해 장애인 쉼터운영(국비)	307-05 민간위탁금	551,529	0	13,438		564,967,000	100%	
14	장애인복지정책과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운영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300,000	300,000	0	2023-10-20	0	-	버스요금 인상 및 장애인 버스 이용 규모 증가에 따라, 버스요금 환급액 부족분 확보를 위한 예산 전용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5,050,102	0	300,000		5,350,102,000	100%	
15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운영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4,514,037	200,000	0	2023-10-20	4,036,030,523	94%	버스요금 인상 및 장애인 버스 이용 규모 증가에 따라, 버스요금 환급액 부족분 확보를 위한 예산 전용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4,850,102	0	200,000		5,350,102,000	100%	

연 번	과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 승인일자	전용후 예산집행상 황		사유
	조직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집행액	집행률	
16	장애인복지장학회	장애인단체활동 및 행사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3,816,000	799,498	0	2023-10-20	3,079,885,000	100%	버스요금 인상 및 장애인 버스 이용 규모 증기에 따라, 버스 요금 환급액 부족분 확보를 위 한 예산 전용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4,050,604	0	799,498		5,350,102,000	100%	
17	장애인복지장학회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운영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 금	1,353,600	65,000	0	2023-11-21	1,190,924,020	93%	단체활동 보조금 예산 부족액 확보를 위한 예산 전용
		장애인단체활동 및 행사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3,016,502	0	65,000		3,079,885,000	100%	
18	장애인복지장학회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운영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 금	1,288,600	12,000	0	2023-11-21	1,190,924,020	93%	보조사업별 사업효과성, 사업 계획 대비 목표 달성도, 예산 집행 적정성 등에 대한 단체활 동 보조사업 성과평가 비용 확 보를 위한 예산전용
		장애인단체활동 및 행사지원	201-01 사무관리비	80,000	0	12,000		91,583,000	100%	
19	장애인복지장학회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307-05 민간위탁금	6,651,097	114,750	0	2023-12-18	5,713,965,540	87%	2023년 장애인거주시설 기능 보강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통 보(4.5차)에 따라 매칭시비 확보를 위해 예산 전용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402-03 민간위탁사업비	127,121	0	114,750		241,871,000	100%	

연 번	과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 승인일자	전용후 예산집행상 황		사유
	조직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집행액	집행률	
20	장애인복지장려과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307-05 민간위탁금	6,669,655	18,558	0	2023-12-18	5,713,965,540	87%	2023년 장애인거주시설 기능 보강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통 보(4,5차)에 따라 매칭시비 확보를 위해 예산 전용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499,044	0	18,558		497,790,750	96%	
21	장애인차량지원과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307-05 민간위탁금	1,126,168	644	0	2023-04-18	1,154,864,000	100%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 행령」 제4조(손해보험 및 공 제계약)에 따른 공유재산 손해 보험(공제) 가입료 마련 (장 애 인 자 립 지 원 과 -9528,'23.4.14.)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201-02 공공운영비	0	0	644		607,240	94%	
22	장애인차량지원과	장애인직업재활시 설 운영	307-05 민간위탁금	3,187,244	4,061	0	2023-04-18	3,053,112,861	96%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 행령」 제4조(손해보험 및 공 제계약)에 따른 공유재산 손해 보험(공제) 가입료 마련 (장 애 인 자 립 지 원 과 -9528,'23.4.14.)
		장애인직업재활시 설 운영	201-02 공공운영비	0	0	4,061		3,826,000	94%	

연 번	과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 승인일자	전용후 예산집행상 황		사유
	조직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집행액	집행률	
23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일자리 통합지원센터 운영	307-05 민간위탁금	1,677,046	787	0	2023-04-18	1,670,435,000	100%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 행령」 제4조(손해보험 및 공 제계약)에 따른 공유재산 손해 보험(공제) 가입료 마련 (장 애 인 자 립 지 원 과 -9528,'23.4.14.)
		장애인일자리 통합지원센터 운영	201-02 공공운영비	0	0	787		763,400	97%	
24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체육시설 운영	307-05 민간위탁금	1,310,942	12,000	0	2023-04-18	1,318,942,000	100%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 행령」 제4조(손해보험 및 공 제계약)에 따른 공유재산 손해 보험(공제) 가입료 마련 (장 애 인 자 립 지 원 과 -9528,'23.4.14.)
		장애인체육시설 운영	201-02 공공운영비	0	0	12,000		2,162,600	18%	
25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복지관 운영	307-05 민간위탁금	23,828,550	25,000	0	2023-04-18	23,241,206,000	97%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 행령」 제4조(손해보험 및 공 제계약)에 따른 공유재산 손해 보험(공제) 가입료 마련 (장 애 인 자 립 지 원 과 -9528,'23.4.14.)
		장애인복지관 운영	201-02 공공운영비	0	0	25,000		20,314,190	81%	

연 번	과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 승인일자	전용후 예산집행상 황		사유
	조직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집행액	집행률	
26	장애인자립지원과	발달장애인 사회적응지원센터 운영	307-05 민간위탁금	640,352	350	0	2023-04-18	640,002,000	100%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 행령」 제4조(손해보험 및 공 제계약)에 따른 공유재산 손해 보험(공제) 가입료 마련 (장 애 인 자 립 지 원 과 -9528, '23.4.14.)
		발달장애인 사회적응지원센터 운영	201-02 공공운영비	0	0	350		331,900	95%	
27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체육시설 기능보강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343,900	12,000	0	2023-09-20	320,831,000	97%	공유재산 손해보험(공제) 가입 위한 예산전용(민간위탁금→공 공운영비)으로 인해 민간위탁 금 부족분 발생 (장 애 인 자 립 지 원 과 -21014, '23.9.14.)
		장애인체육시설 운영	307-05 민간위탁금	1,306,942	0	12,000		1,318,942,000	100%	
28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가족 아동양육지원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7,356,763	196,000	0	2023-12-01	5,517,410,000	79%	23년 장애수당(기초, 차상위 등) 지원 대상자 증가로 사업 비 부족하여 국고보조금 증액 요청 → 국고보조금 증액 통보 (23.10.12.)에 따른 매칭시 비 확보(장애인자립지원과 -26737, '23.11.30.)
		장애수당-기초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 금	28,973,902	0	196,000		29,090,567,000	100%	

연 번	과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 승인일자	전용후 예산집행상 황		사유
	조직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집행액	집행률	
29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아가족 아동양육지원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7,160,763	196,000	0	2023-12-06	5,517,410,000	79%	23년 장애수당(기초, 차상위 등) 지원 대상자 증가로 사업 비 부족하여 국고보조금 증액 요청 → 국고보조금 증액 통보 (23.10.12.)에 따른 매칭시 비 확보(장애인자립지원과 -26737, '23.11.30.)
		장애수당-차상위 등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 금	11,584,188	0	196,000		11,709,453,000	99%	
30	장애인자립지원과	중증장애인연금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 금	161,655,397	53,950	0	2023-12-28	157,548,862,000	97%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 시 행에 따른 통합금융카드 교체 발급 신청 증가로 부족예산 확 보 위해 전용(장애인자립지원 과-28839, '23.12.28.)
		장애인복지카드 원스톱발급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259,760	0	53,950		313,709,860	100%	
31	자활지원과	노숙인 요양시설 운영(전환사업)	307-05 민간위탁금	9,821,221	130	0	2023-04-24	8,850,738	90%	민간위탁시설(은평의마을) 태 양광 발전설비(영조물) 재해복구 공제 (피보험자:서울특별시) 가입을 위한 공공운영비 마련
		노숙인 요양시설 운영(전환사업)	201-02 공공운영비	0	0	130		94	72%	

① 서울 돌봄SOS센터 설치 운영

- ‘서울 돌봄 SOS센터 설치 운영’ 사업은 ‘19년 시범사업의 형태로 5개 자치구에서 시작되었으며, ‘20년 8월 전 자치구로 확대되어 시행되었음. 해당 사업은 기존 제도를 통해 해결하기 어려운 긴급하게 발생한 일시적인 특성을 가진 돌봄욕구(‘돌봄사각지대’)에 대응하여, 5대 서비스와 중장기 돌봄연계를 활용하여 돌봄매니저가 맞춤형 돌봄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 제공기관과 협력하여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돌봄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사업임.

※ 2023년 돌봄SOS센터 돌봄서비스 사업 개요

- 사업대상 : 돌봄이 필요한 시민 (※ 어르신, 장애인, 만 50세이상 중장년 주 대상)
- 사업시행 : '19.7.18일부터 운영 및 서비스 시행
 - 25개 전 자치구 확대 시행('20. 8월~), 425개동 확대 시행('22.1월 신규인력 배치 완료)
- 신청 · 발굴 된 돌봄 대상자에 돌봄매니저 방문 후 10대 돌봄서비스 지원(연계)
 - 서비스 비용 : 중위소득 100%이하 전액 지원 ('23.1.12일 시행 예정), 그 외 시민 자부담
 - 1인 연간 최대지원 금액 : 1,600,000원 ('22년대비 변동없음)
 - 5대돌봄서비스별 추가적용 비용지원 (일시재가, 단기시설, 동행지원, 주거편의, 식사배달)

- 해당 사업에서는 사무관리비 1억 1천만원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억 1천만으로 전용시킨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2023년 서울돌봄 SOS센터 설치 운영 사업 전용 현황

(단위:천원)

통계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승인일자	전용후 예산집행 상황		
		감액	증액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201-01 사무관리비	250,000	110,000	-	2023-12-11	140,000	130,218	93%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2,911,900	-	110,000		33,021,900	32,972,900	100%

- 사무관리비는 사업 홍보, 매뉴얼 제작, 사업설명회, 돌봄매니저 워크숍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돌봄매니저 인건비와 돌봄 SOS센터 서비스지원 사업비로 편성되어 있음.

<표> 2023년 서울 돌봄 SOS센터 설치운영 사업 편성 현황

과목구분	예산액	예산산출 현황
사무관리비	250,000천원	○ 돌봄 SOS 센터 홍보 100,000천원 ○ 매뉴얼 제작, 사업설명회, 돌봄매니저, 워크숍 등 150,000천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2,912,500천원	○ 돌봄매니저 인건비 15,412,500천원 ○ 돌봄SOS센터 서비스지원 사업비 17,500,000천원

- 돌봄SOS센터 서비스 지원 사업비는 동주민센터에서 신청·발굴된 돌봄 대상자에게 10대 돌봄서비스를 연계·지원하고 소득 수준에 따라 그 비

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10대 돌봄서비스 중 5대 돌봄서비스는 수가를 적용해 비용을 지원하게 됨.

- 특히 2023년도부터는 전년도까지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85%이하의 시민들에게 전액 지원되던 서비스 비용을 중위소득 100%이하의 시민들로 확대하여 지급함.(연간 1인 한도금액은 1,600,000원)

<표> 돌봄 SOS센터 5대 돌봄서비스 수가 및 운영사항

구 분	수가 기준	제공 시간	이용 한도	세부 운영 사항
일시재가 서비스	수가표 참고	24시간 (접수시간 아님)	연간 최대 60시간	·기본수가(30분 16,190원) ·1일 이용 한도 금액(218,480원) ·1일 이용시간 8시간 이내 계획 권장 ·시간할증 고난도업무수가 교통비 no-show
단기시설 서비스	1일 63,250원	24시간 (접수시간 아님)	연간 최대 14일 *1일: 12시간 이상	·12시간 미만 이용시 50% 감액 ·입소 기간 중 식대 전액 자부담 ·교통비
동행지원 서비스	1시간 15,400원	평일 09~18시 *필요시 할증시간 가능 가급적 업무시간 이내	연간 최대 12회	·기본수가(1회 15,400원) ·필요시 2명 이상 배치 가능 ·비용지원(교통비 연간 12만원 이내) ↳ 연간 한도 금액 외 지원 사항 ·시간할증 고난도업무수가 교통비 no-show
주거편의 서비스	▶인력 1인 기준	평일 09~18시 *필요시 할증시간 가능 가급적 업무시간 이내	1인당 연간 이용 금액 한도 이내 *필요시 가구 기준	·기본수가(1회 15,400원) ·필요시 2명 이상 배치 가능 ·비용지원(재료비 연간 15만원 이내) ↳ 연간 한도 금액 외 지원 사항 ·시간할증 교통비(+출장비) 재료비 no-show
식사배달 서비스	1식 8,900원 ▶배달비 포함	평일 09~18시	연간 최대 30식 *1개월 이내 서비스 완료 권장	·식수 및 배송 주기 조정 가능 ·수가 내 제조·배달비 구성 자율 ·배달업체 별도계약 활용 가능

○ 금번에 집행기관에서 예산을 변경·전용⁶⁾한 사유는 일부 자치구⁷⁾에서 돌봄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사업비 추가교부를 요청하였기 때문임.

- 집행기관에서는 돌봄SOS 사업비를 매 분기별로 교부해왔으나 돌봄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안정적인 예산 관리를 위해 7월부터 월별 교부로 변경함. 그럼에도 자치구에서 지속적으로 사업비 추가교부를 요청함에 따라 예산 변경·전용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임.

<표> 2023년도 자치구별 돌봄서비스 제공실적

(단위: 명, 건)

구 분	지원인원	5대 단기 돌봄서비스					
		계	일시재가	단기시설	동행지원	주거편의	식사배달
전 체	33,985	58,467	12,587	52	10,596	12,432	22,800
종로	937	2,095	215	3	31	104	1,742
중	774	1,612	295	0	288	262	767
용산	879	1,595	260	0	459	320	556
성동	1,494	2,520	526	0	433	816	745
광진	1,889	4,768	553	0	689	1,176	2,350
동대문	1,055	2,014	662	14	223	253	862
중랑	969	1,237	666	7	142	163	259
성북	1,365	1,837	481	4	274	302	776
강북	773	1,538	403	0	62	83	990
도봉	1,593	2,792	713	3	467	540	1,069
노원	1,583	2,257	1,005	0	426	127	699
은평	2,118	3,193	650	0	384	1,209	950
서대문	1,454	2,440	423	0	601	504	912

6)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전용 110,000천원 외에도 인건비(자치단체 등 이전) 176,000천원을 서비스지원 사업비(자치단체 경상 보조금)으로 변경해 총 286,000천원을 서비스사업비로 추가 편성한 것으로 나타남.

7) 8개 자치구(중구, 중랑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구로구, 관악구, 서초구)에서 추가 교부 신청. 신청시점은 11월 말~12월 초로 나타남.

구 분	지원인원	5대 단기 돌봄서비스					
		계	일시재가	단기시설	동행지원	주거편의	식사배달
마포	1,574	2,750	467	0	607	757	919
양천	1,817	3,101	766	1	582	640	1,112
강서	1,319	2,676	658	4	1,098	268	648
구로	1,284	2,326	456	0	703	556	611
금천	1,328	2,051	368	0	176	852	655
영등포	1,913	2,780	431	0	333	774	1,242
동작	1,497	2,725	408	0	669	651	997
관악	1,843	2,973	667	1	586	920	799
서초	976	1,718	202	2	450	210	854
강남	327	493	281	0	22	25	165
송파	1,768	2,589	491	0	384	428	1,286
강동	1,456	2,387	540	13	507	492	835

- 다만, 해당 사업은 '23년 1월부터 서비스 전액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100%까지 확대시키면서 이용 증가가 충분히 예측되었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3년 예산편성과정에서 돌봄SOS센터 서비스지원 사업비는 전년도와 같은 액수인 17,500,000천원으로 편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충분한 예산 확보를 통해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예산이 충분치 않은 상황을 고려하여 긴급하고 일시적인 돌봄 위기 상황에 대응한다는 돌봄SOS 사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돌봄서비스를 집중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 기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② 서울시복지재단 출연금

- 해당 사업은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운영되는 서울시복지재단 출연금으로, 서울시복지재단의 운영을 위해 편성되는 사업비, 운영비, 인건비 등을 포함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서울시복지재단 출연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서울시복지재단 예산은 일반 연구 및 사업 운영을 위한 일반회계와 서울 꿈나래통장, 희망두배청년통장 등 대상자 직접 지급사업 등으로 구성된 기금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결산 현황은 아래 표와 같음.
 - 특히 2023년도의 경우 안심소득 2단계 시범사업 운영과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센터 등 사업 예산의 증가로 출연금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최근 3년 서울시복지재단 출연금 편성 현황

(단위: 천원)

연도	최종예산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2021	42,434,575	42,434,575	42,434,575	0
2022	51,958,346	51,958,346	49,398,333	2,560,013
2023	76,022,567	76,022,567	73,267,352	2,755,215

<표> 최근 3년 서울시복지재단 일반회계 사업결산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최종예산		실집행액 (집행률)	
	일반회계	기금회계	일반회계	기금회계
2021	29,232,897	23,526,211	25,702,227 (88%)	18,445,121 (78%)
2022	30,354,900	32,388,306	28,405,665 (94%)	28,644,250 (88%)
2023	33,908,147	48,537,611	30,396,028 (90%)	42,124,349 (87%)

※ 집행액 중 반환금 및 이월액은 제외함

○ '23년도 복지재단 일반사업 중 집행률이 90%미만인 사업은 아래 표와 같음.

<표> 서울시복지재단 '23년도 집행률 90%미만 사업

(단위: 천원)

연번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집행률
1	디지털시대 돌봄서비스 발전방안 연구	45,670	40,727	4,943	89%
2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성공요인 연구	30,442	24,930	5,512	82%
3	서울형 좋은돌봄인증제도 개선방안 연구	25,928	11,178	14,750	43%
4	정책 현안 대응 융합연구	71,518	33,657	37,861	47%
5	2023년 연구기획 및 성과관리	86,486	76,743	9,743	89%
6	2023년 안심소득 시범사업 성과평가 연구	1,743,752	800,635	943,117	46%
7	2023년 안심소득 시범사업 운영	390,148	339,933	50,215	87%
8	사회복지시설 운영 법인 인증	33,910	0	33,910	0%
9	자산형성지원사업 참가자 지원	2,085,400	1,687,140	398,260	81%
10	공익소송 지원	39,000	27,029	11,971	69%
11	공익활동 수행	61,772	51,344	10,428	83%

연번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집행률
12	사업운영 시스템 고도화	92,472	82,009	10,463	89%
13	노후전산장비 교체	126,805	113,259	13,546	89%
14	내부고객만족 및 조직활성화	46,400	36,276	10,124	78%
15	복지거버넌스 강화	119,173	105,414	13,759	88%

- 이 가운데 ‘사회복지시설 운영 법인 인증’ 사업의 경우 서울시의 법인인증 사업 통보로 인해 미집행 되어 전액을 미사용한 것으로 나타남. 서울시 복지정책과에서는 2022년 12월 27일에 사업 종료 통보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해당 사업의 종료를 위한 논의는 예산편성 단계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판단되며, 집행기관과의 면밀한 소통을 통해 예산 편성단계에서 조정해 반영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 해당 사업은 2018년부터 실시된 사업으로, 사회복지법인을 대상으로 운영법인의 공공성, 투명성, 전문성을 인증하는 제도로 일부 운영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한 기부금 및 보조금 횡령, 인권침해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고 복지시설에 대한 신뢰를 시민에게 주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 사업임.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는 지속적으로 인증을 위한 법인의 낮은 참여율 등이 지적된 바 있음.

<표> 최근 3년 법인인증사업 현황

(단위 : 천원)

	신청 법인수	인증 법인수	사업예산액	집행액(집행률)	비고
2020년	6	4	19,040	17,373(91.2%)	
2021년	10	8	28,000	25,917(92.6%)	* 철회 2기관
2022년	8	7	34,078	28,674(84.1%)	

- '23년 사업부터 해당 사업은 종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사회복지법인의 투명성·공정성 등은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온 측면이 있음. 특히 다수의 사회복지법인이 시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운영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사회복지법인의 신뢰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법인의 역량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법인들의 참여가 낮다는 이유로 해당 사업을 종료하는 것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 서울시복지재단은 집행기관인 서울시의 주요 복지정책 등에 대한 연구를 실시해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 뿐 아니라 최근 3년간은 자립토대 지원사업,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센터 등 서울시의 주요 복지정책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표> 최근 3년 서울시복지재단 주요 신규사업 현황

(단위: 천원)

구분	신규사업 명	주요사업 내용	사업 집행내역	
			예산	집행액(집행률)
2021	포스트코로나 대응 지역복지 서비스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 : 서울시 종합사회복지관 •내용 : 주체별 역량강화(교육, 간담회 등) 및 자문 지원 등 	27,721	25,200 (91%)
	장애인 지원주택 운영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 : 지원주택 입주자, 장애인 지원주택 전담인력, 서울시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내용 : 장애인지원주택 전담인력교육, 지원주택 품질관리 추진 기획, 폐쇄 계획 거주시설 종사자 지원주택 고용전환 교육체계 	121,110	82,902 (68%)

구분	신규사업 명	주요사업 내용	사업 집행내역	
			예산	집행액(집행률)
		개발 및 교육		
2022	지역밀착형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 : 서울시 내 25개 복지관 •내용 : 민·관 협력 시범사업 설계 및 컨설팅 지원, 역량강화 실시, 업무 가이드라인 개발, 시범사업 결과 분석 및 공유를 통한 사업확산 추진 기반 마련 등 	50,700	49,874 (98%)
	안심소득 시범사업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 :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 •내용 : 안심소득 시범사업 가구 모집 및 관리, 급여지급 등 	184,310	181,260 (98%)
	안심소득 시범사업 운영(기금_급여지급)		3,000,323	2,817,647 (94%)
2023	고립가구 스마트복지 운영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 : 사회적 고립가구 •내용 : 지원 거부가구 중점 대응, 위기대응 시스템 총괄관리, 고립가구 지원체계 역량강화 및 정책개발 등 	1,010,370	927,076 (92%)
	고립가구 위기대응총괄시스템 구축		145,709	138,959 (95%)
	고립가구 인식개선 지원		47,254	46,259 (98%)
	금융취약 청년재기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 : 만39세 이하 서울시 금융취약 청년(일반시민 병행상담) •내용 : 청년특화센터로 청년 대상 재무상담 전문성을 확보 및 청년대상 맞춤형 금융복지사업 강화를 통한 재기지원 강화 	680,738	637,817 (94%)
	청년 자립도대 지원금(기금)		150,000	40,000 (27%)

○ 특히 '23년도 복지재단 출연금의 경우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1억 6천8백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나 추경편성의 사유였던 청년자립도대지원사업의 실적의 저조 등으로 예산사용마감인 12월에 전용을 실시했을 뿐

아니라 불용액까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은 개인회생 면책 예정 및 면책완료 청년들에게 자립토대 지원금 100만원을 총 150명에게 지원하고자 1억 6천8백만원 (자립토대지원금 1억5천만원, 운영비 1천8백만원)의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결산 결과 그 가운데 4천만원(27%)밖에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특히 해당 사업은 상임위원회 예산심의과정 등에서 서울시 타 청년관련 사업과의 유사성이 지적된 바 있음.
- 산하기관을 활용해 시범사업 등을 진행하고 이를 평가·분석하는 것은 사업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사업방식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정부분 필요하다 하겠으나, 서울시의회의 예산 심의시에는 ‘출연금’으로만 편성되어 서울시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음.
- 과도한 신규사업으로 출연금이 늘어나는 것은 향후 서울시의 재정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서울시복지재단의 사업범위와 사업규모에 대해서는 관리부서인 복지정책과의 감독강화가 필요하다 하겠음.

나) 예산의 변경

- 예산변경사용은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통계목) 간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복지정책실 ‘23년도 예산변경사용 건수는 총 34건, 1,332억 5천3백만원으로, 22년도에 비해 건수(전년도 27건) 및 금액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전년도 98억 7천 9백만원)

- '23년도 복지정책실의 변경 사업비가 대량 늘어난 것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운영,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 등 대상자에게 직접현금 지급 대상인 사업의 통계목 편성이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로 최초 편성되어 이를 사회보장적수혜금(301-02)로 변경편성했기 때문임.
- 집행기관에서는 최초 행정안전부에서 배포된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서 사회복지분야 관련 복지사업은 사회복지사업보조로 편성해야한다는 지침내용에 따라 편성하였으나 향후 조정 과정에서 급여 지급을 위해서는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편성해야 할 것으로 조정되어 '23년 1월 변경(7건)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남.

<표> 2023년도 복지정책실 예산변경 내역

(단위: 천원, %)

연번	과목			예산액	변경금액		변경승인 일자	변경후예산집행상황		변경사유
	조직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집행액	집행률	
1	복지정책과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운영	307-11 사회복지사업보 조	14,435,744	14,435,74 4	0	2023-01-16	0	-	다수의 현금성 급여 대상자에게 효율적으로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자치구 재배정 가능한 통계목으로 예산 변경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운영	301-02 사회보장적수혜 금(취약계층,지 방재원)	0	0	14,435,744		18,143,256	97.8%	
2	복지정책과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	307-11 사회복지사업보 조	29,896,000	22,962,40 0	0	2023-01-16	6,542,590	94.4%	다수의 현금성 급여 대상자에게 효율적으로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자치구 재배정 가능한 통계목으로 예산 변경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	301-02 사회보장적수혜 금(취약계층,지 방재원)	0	0	22,962,400		22,225,992	94.5%	

연번	과목			예산액	변경금액		변경승인 일자	변경후예산집행상황		변경사유
	조직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집행액	집행률	
3	복지정책과	보훈대상자 등 지원	307-11 사회복지사업보 조	72,981,500	72,981,500 0	0	2023-01-16	0	-	다수의 현금성 급여 대상자에게 효율적으로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자치구 재배정 가능한 통계목으로 예산 변경
		보훈대상자 등 지원	301-02 사회보장적수혜 금(취약계층,지 방재원)	0	0	72,981,500		69,333,692	95.0%	
4	장애인복지정책과	탈시설 협치 추진	307-11 사회복지사업보 조	1,800,000	1,800,000	0	2023-01-16	0	-	현금성 급여(시설퇴소장애인 자립 정착금)의 효율적 지급을 위해 자 치구 재배정이 가능한 통계목으로 예산변경
		탈시설 협치 추진	301-02 사회보장적수혜 금(취약계층,지 방재원)	0	0	1,800,000		825,000	45.8%	

연번	과목			예산액	변경금액		변경승인 일자	변경후예산집행상황		변경사유
	조직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집행액	집행률	
5	장애인차량지원과	서울형 장애인 부기급여	307-11 사회복지사업보 조	15,000,000	15,000,00 0	0	2023-01-16	0	-	예산 편성 시, 예산과목을 '사회복 지사업보조'로 편성하였으나, 해당 사업은 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추 진하는 민간 지급 사회보장적 현 금성 수혜금으로 사업내용에 맞게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예산과목 변경
		서울형 장애인 부기급여	301-02 사회보장적수혜 금(취약계층,지 방재원)	0	0	15,000,000		14,795,057	98.6%	
6	장애인차량지원과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사업	307-11 사회복지사업보 조	213,420	213,420	0	2023-01-16	0	-	다수의 현금성 급여 대상자에게 효율적으로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자치구 재배정 가능한 통계목(사 회보장적수혜금)으로 예산 변경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사업	301-02 사회보장적수혜 금(취약계층,지 방재원)	0	0	213,420		129,270	60.6%	

연번	과목			예산액	변경금액		변경승인 일자	변경후예산집행상황		변경사유
	조직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집행액	집행률	
7	장애인복지관	남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307-11 사회복지사업보 조	144,000	144,000	0	2023-01-16	0	-	다수의 현금성 급여 대상자에게 효율적으로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자치구 재배정 가능한 통계목(사 회보장적수혜금)으로 예산 변경
		남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301-02 사회보장적수혜 금(취약계층,지 방재원)	0	0	144,000		131,000	91.0%	
8	복지정책과	의료급여사업	308-11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 비	1,908,230,1 55	221,500	0	2023-12-14	1,573,091,560	82.5%	요양비, 장애인보조기기 지원비 등 자치구 수요에 따라 부족한 사 업비 지급을 위해 예산변경
		의료급여사업	308-01 자치단체경상보 조금	18,095,160	0	221,500		18,316,660	100.0%	
9	복지정책과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생계급여	308-01 자치단체경상보 조금	1,070,996,6 67	13,845	0	2023-12-27	1,069,517,004	99.9%	23년 의료급여관리사 성과금 지 급을 위한 복지부 국고보조금 증 액 내시 통보에 따라 매칭시비 확 보를 위해 예산 변경
		의료급여관리사 지원	308-01 자치단체경상보 조금	3,182,843	0	13,845		3,196,688	100.0%	

연번	과목			예산액	변경금액		변경승인 일자	변경후예산집행상황		변경사유
	조직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집행액	집행률	
10	안심돌봄복지과	서울 돌봄 SOS 센터 설치 운영	308-01 자치단체경상보 조금	32,912,500	600	0	2023-03-20	32,972,900	99.9%	보건복지부 '통합사례관리 지원-현장 슈퍼바이저 운영' 사업 1개 자치구(은평구) 참여 신청 및 보건복지부 사업 추진계획 및 예산 확정 통보('22.12.)됨에 따라 국비보조금 매칭 시비 확보를 위해 예산 변경
		통합사례관리 지원-현장 슈퍼바이저 운영	308-01 자치단체경상보 조금	300	0	600		1,800	100.0%	
11	어르신복지과	어르신 돌봄서비스 지원 강화(시비)	308-01 자치단체경상보 조금	4,441,090	130,000	0	2023-02-14	4,234,629	98.2%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광역지원기관 운영법인 공모 결과, 자치구 관할 수행기관이 아닌 독립 법인이 선정됨에 따라 '자치단체 경상보조' → '사회복지 사업보조'로 예산(통계목) 변경
		노인맞춤돌봄서비스	307-11 사회복지사업보 조	200,640	0	130,000		330,640	100.0%	
12	어르신복지과	노인복지관 시설관리 및 확충	402-03 민간위탁사업비	2,982,398	820,036	0	2023-04-10	2,162,362	100.0%	시립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자치구 직접 시행
		노인복지관 시설관리 및 확충	401-01 시설비	0	0	820,036		820,036	100.0%	

연번	과목			예산액	변경금액		변경승인 일자	변경후예산집행상황		변경사유
	조직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집행액	집행률	
13	어르신복지과	노인복지관 시설관리 및 확충	402-03 민간위탁사업비	2,162,362	177,000	0	2023-05-08	1,985,362	100.0%	시립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자치구 직접 시행
		노인복지관 시설관리 및 확충	401-01 시설비	820,036	0	177,000		920,493	92.3%	
14	어르신복지과	어르신 복지시설 설치 지원	401-01 시설비	6,479,585	91,544	0	2023-08-01	6,351,617	99.5%	시립강동살버케어센 건립사업 안전시설 보완, 민원해소, 조경보완 등에 따른 공사 물량 및 기간 증가에 따른 부족한 감리비 확보
		어르신 복지시설 설치 지원	401-02 감리비	304,739	0	91,544		396,283	100.0%	
15	어르신복지과	어르신 복지시설 설치 지원	401-01 시설비	6,388,041	2,000	0	2023-08-01	6,351,617	99.5%	시립강동살버케어센 건립사업 안전시설 보완, 민원해소, 조경보완 등에 따른 공사 물량 및 기간 증가에 따른 부족한 시설부대비 확보
		어르신 복지시설 설치 지원	401-03 시설부대비	0	0	2,000		150	7.5%	
16	어르신복지과	어르신의료복지시설 운영(요양)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5,313,863	101,400	0	2023-11-28	4,515,888	94.8%	어르신돌봄종사자 지원센터 운영 효율화 방안 계획에 따라 쉼터 4개소 폐지에 소요되는 예산 부족분 확보 필요
		어르신돌봄종사자 지원	307-05 민간위탁금	3,899,558	0	101,400		4,000,457	100.0%	

연번	과목			예산액	변경금액		변경승인 일자	변경후예산집행상황		변경사유
	조직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집행액	집행률	
17	어르신복지과	노인복지관 시설관리 및 확충	403-01 자치단체자본보 조	6,101,304	29,190	0	2023-12-05	6,058,032	99.8%	시립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 3건 추가에 따른 사업비 확보
		노인복지관 시설관리 및 확충	402-03 민간위탁사업비	3,246,912	0	29,190		3,276,102	100.0%	
18	어르신복지과	어르신의료복지시 설 운영(요양)	307-11 사회복지사업보 조	5,212,463	447,514	0	2023-12-06	4,515,888	94.8%	2023년 서울형 좋은돌봄 4분기 인증보조금(데이케어) 확보 필요
		어르신데이케어센 터 설치 및 운영 지원	307-11 사회복지사업보 조	13,713,500	0	447,514		14,149,682	99.9%	
19	장애인복지과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사업 운영	307-05 민간위탁금	832,000	832,000	0	2023-04-11	0	-	보건복지부 신규 사업으로 당초 서울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통한 수행 방식에서 민간공모방식으로 변경되어 통계목 변경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사업 운영	307-11 사회복지사업보 조	0	0	832,000		442,342	53.2%	
20	장애인복지과	장애인공동생활가 정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77,700	633	0	2023-07-06	38,910	50.5%	시유재산(중랑구 소재, 공가) 공 공요금 납부를 위한 예산변경
		장애인공동생활가 정 운영	201-02 공공운영비	0	0	633		627	99.1%	

연번	과목			예산액	변경금액		변경승인 일자	변경후예산집행상황		변경사유
	조직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집행액	집행률	
21	장애인복지센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308-01 자치단체경상보 조금	12,889,800	163,000	0	2023-07-07	12,230,579	96.1%	당초 자치구 공모를 통해 전문가 배치를 추진하였으나, 자치구 전 문가 인력풀 확보 및 채용 계약 등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 상되어 민간단체 공모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통계목 변경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307-11 사회복지사업보 조	0	0	163,000		163,000	100.0%	
22	장애인복지센터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67,200	10,000	0	2023-08-25	46,713	81.7%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 대신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 비용 확 보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50,860	0	10,000		78,610	99.6%	
23	장애인복지센터	탈시설 장애인 자립정착 지원 시범사업(보건복지 부)	307-11 사회복지사업보 조	917,032	527,816	0	2023-08-28	0	0.0%	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 통계목 변 경(국고보조금→균형발전특별회계 에 따라 별도 세부사업(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신설 하여, 매칭 시비 전액 예산 변경 함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307-11 사회복지사업보 조	433,000	0	527,816		0	0.0%	

연번	과목			예산액	변경금액		변경승인 일자	변경후예산집행상황		변경사유
	조직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집행액	집행률	
24	장애인복지재단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	307-05 민간위탁금	501,760	46,000	0	2023-10-20	421,760	92.5%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매 청시비 증액
		서울시 발달장애인지원센 터 설치·운영	307-05 민간위탁금	607,800	0	46,000		653,800	100.0%	
25	장애인복지재단	장애인 인권증진 및 인식개선	201-01 사무관리비	74,000	15,000	0	2023-10-20	22,179	37.6%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시설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어울림플라 자 운영방향에 대한 컨설팅용역 시행
		어울림플라자(가칭) 건립 및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70,000	0	15,000		61,534	72.4%	
26	장애인복지재단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30,000	410	0	2023-10-23	25,217	85.2%	시립평화로운집 손해보험(공제) 가입비용 확보를 위한 변경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201-02 공공운영비	700	0	410		1,093	98.5%	
27	장애인복지재단	인권침해 장애인 쉼터운영(시비)	406-01 기타자본이전	420,000	35,000	0	2023-11-15	0	0.0%	쉼터이전계획 변경(매입임대주택 이전 → 시유재산 취득)에 따라, 시설개선 공사비 확보를 위한 통계목 변경
		인권침해 장애인 쉼터운영(시비)	401-01 시설비	0	0	35,000		0	0.0%	

연번	과목			예산액	변경금액		변경승인 일자	변경후예산집행상황		변경사유
	조직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집행액	집행률	
28	장애인차량취급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2,740,255	27,500	0	2023-12-01	9,694,346	93.6%	서울시보조기기센터(동남,서북) 민간위탁금(인건비) 부족분 확보를 위해 예산 변경
		서울시보조기기센터 운영	307-05 민간위탁금	1,486,559	0	27,500		1,514,059	100.0%	
29	장애인차량취급	반대비체육센터 건립	401-01 시설비	1,000,000	30,000	0	2023-01-19	54,890	5.7%	자문수수료(건설기술심의 등) 및 인증수수료(녹색건축, 에너지효율 등급, BF) 등의 부대비가 필요하여 시설비 일부 예산 변경
		반대비체육센터 건립	401-03 시설부대비	0	0	30,000		17,866	59.6%	
30	장애인차량취급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307-10 사회복지시설법 정운영비보조	31,302,950	262,500	0	2023-07-13	27,985,934	94.1%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긴급돌봄사업 수요 증가로 사업비 조기 소진되어 예산 변경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658,004	0	262,500		2,857,833	97.9%	
31	장애인차량취급	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별관 건립	401-01 시설비	3,000,000	170,776	0	2023-09-18	2,105,112	74.4%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인원(전기, 기계 분야) 추가배치 필요하여 시설비 일부 감리비로 예산 변경
		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별관 건립	401-02 감리비	382,000	0	170,776		424,275	76.8%	

연번	과목			예산액	변경금액		변경승인 일자	변경후예산집행상황		변경사유
	조직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집행액	집행률	
32	장애인차량지원과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307-10 사회복지시설법 정운영비보조	31,040,450	1,290,190	0	2023-10-19	27,985,934	94.1%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의 사업 수요 급증 및 국고보조금 증액 교 부에 따라 매칭시비 확보를 위한 예산변경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308-01 자치단체경상보 조금	16,440,969	0	1,290,190		17,731,159	100.0%	
33	자활지원과	쪽방거주자 생활안정지원(쪽방 상담소 운영 지원)	402-03 민간위탁사업비	772,408	230,000	0	2023-07-28	428,600	65.7%	쪽방촌 특화형 푸드마켓(온기창 고) 설치·운영계획이 민간건물 임 차 방식에서 건물 매입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쪽방건물(토지) 매 입 비용으로 변경(자활지원과 -9719, 2023.7.17.)
		쪽방거주자 생활안정지원(쪽방 상담소 운영 지원)	401-01 시설비	400,000	0	230,000		589,438	93.6%	
34	자활지원과	쪽방거주자 생활안정지원(쪽방 상담소 운영 지원)	402-03 민간위탁사업비	542,408	40,000	0	2023-07-28	428,600	65.7%	쪽방촌 특화형 푸드마켓(온기창 고) 설치·운영계획이 민간건물 임 차 방식에서 건물 매입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쪽방건물 매입 비 용으로 변경(자활지원과-9719, 2023.7.17.)
		쪽방거주자 생활안정지원(쪽방 상담소 운영 지원)	405-01 자산및물품취득 비	0	0	40,000		40,000	100.0%	

다) 예산 이월사업

- 예산의 이월제도는 지방재정법 제7조8)에서 명시된 회계연도 독립원칙의 예외로서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세출 예산을 다음연도에 넘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회계연도의 구분이 문란하게 되면 적절한 재정운영이 곤란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범위에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함.

※ 「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事故移越費)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3. 공익·공공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4.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③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필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월할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 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 이월제도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계속비이월로 나눌수 있으며 명시이월의 경우 의회의 승인으로 예산의 이월이 이루어지게 됨.
- 사고이월은 사업 집행을 위해 지출원인행위(계약 또는 발주)를 한 후 연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예산을 차년도로 넘겨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사업이 당해 연도에 제대로 수행되지

8) 「지방재정법」 제7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①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않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

- 복지정책실 23년도 사고이월은 총 11건, 57억 2천9백만원이 발생하였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표> 23년도 복지정책실 사고이월 내역

(단위: 천원)

연번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다음연 도 이월액	이월사유
1	어르신 복지 시설 설치 지원	401-01 시설비	11,479,317	10,090,142	9,584,242	505,899	공사 및 용역 준공기한, 관급자재 납품기한 미도 래로 2024년으로 이월 하여 집행 예정
2	노인복지관 시설관리 및 확충	401-01 시설비	997,036	939,041	76,838	843,655	관급자재 납품지연에 따 른 공사 준공 지연 및 복 지재단 타당성 재검토로 2024년으로 이월하여 집행 예정
3	노인복지관 시설관리 및 확충	401-02 감리비	29,772	25,628	16,707	8,921	관급자재 납품지연에 따 른 공사 준공 지연 및 복 지재단 타당성 재검토로 2024년으로 이월하여 집행 예정
4	인권침해 장 애인 쉼터운 영(사비)	401-01 시설비	35,000	27,410	0	27,410	쉼터 설계용역이 2024 년에 준공예정으로 이월
5	어울림플라자 (가칭) 건립 및 운영	201-01 사무관리 비	85,000	81,807	61,534	20,273	어울림플라자 설계용역이 2024년에 준공되어 이 월

연번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다음연 도 이월액	이월사유
6	장애인 개인 예산제 시범 도입	201-01 사무관리 비	156,000	138,550	99,150	39,400	사업자 선정공고 등 계약 절차 소요기간에 따른 사 고이월(공고상 용역 준공 기한이 24.3월)
7	시립서대문농 아인복지관 별관 건립	401-01 시설비	7,102,376	7,102,376	3,917,668	3,184,708	23년 폭우, 레미콘 수급 지연 등의 사유로 건립공 사 준공 지연되어 24년 으로 이월하여 집행 예정
8	반다비체육센 터 건립	401-01 시설비	1,990,000	1,310,890	1,074,890	236,000	용역 과업기간 연장, 계 약변경에 따라 24년으로 이월하여 집행 예정
9	반다비체육센 터 건립	401-03 시설부대 비	30,000	17,866	17,866	11,334	사고이월 대상인 설계용 역 관련 경제성 검토비로 24년으로 이월하여 집행 예정
10	시립발달장애 인복지관 별 관 건립	401-01 시설비	3,756,894	3,755,594	3,032,782	722,810	23년 폭우, 레미콘 수급 지연 등의 사유로 건립공 사 준공 지연되어 24년 으로 이월하여 집행 예정
11	시립발달장애 인복지관 별 관 건립	401-02 감리비	702,776	702,776	574,275	128,502	23년 폭우, 레미콘 수급 지연 등의 사유로 건립공 사 준공 지연되어 24년 으로 이월하여 집행 예정

라) 예산 불용사업

-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세출예산을 잘못 예측 편성하여 집행하지 못한 경우 및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사정의 변경으로 이를 일부만 집행한 경우에 발생됨.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세출예산편성에 있어 수요예측이 정확지 않았거나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편성된 예산을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한 결과라고 판단할 수 있음.
- 당초 예상하지 못한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이를 둘러싼 환경적 요인의 변화로 인한 불용액 발생과 같이 불가피한 경우도 일부 인정된다고 하겠으나, 자치구 및 타기관과의 협의 그리고 신규기관 미선정 등과 같은 경우에는 사업 집행에 있어 집행부의 적극성에 문제가 있다고 하겠음. 집행기관에서는 반복적인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임.
- 복지정책실 23년도 20%이상 불용 사업은 총 15개로,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음.

<표> 복지정책실 2023년도 20%이상 불용사업

(단위 : 천원, %)

연번	부서명	세부사업명	본예산	최종예산	예산현액	불용액	불용률
1	복지정책과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평가 추진 및 복지인프라 공공성 강화	78,200	78,200	78,200	36,043	46.0%
2		기본경비	264,071	264,071	264,071	64,546	24.4%
3	인심소득추진과	안심소득 시범사업 추진체계 구축운영	334,600	334,600	334,600	110,454	33.0%
4	장애인 복지정책과	탈시설 협치 추진	1,851,600	1,851,600	1,851,600	977,225	52.7%
5		인권침해 장애인 쉼터운영(사비)	1,029,331	1,029,531	1,030,431	392,590	38.0%

연번	부서명	세부사업명	본예산	최종예산	예산현액	비용액	비용률
6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사업 운영지원(지역)	151,200	151,200	151,200	47,080	31.1%
7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사업 운영	832,000	832,000	832,000	442,342	53.1%
8		전동보장구 수리비 지원사업	574,300	574,300	574,300	139,000	24.2%
9		탈시설 장애인 자립정착 지원 시범사업(보건복지부)	917,032	917,032	389,216	389,216	100.0%
10		학대 피해장애이동 쉼터 운영	818,613	818,613	1,675,509	367,832	21.9%
11		장애인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센터 운영	200,000	200,000	200,000	50,000	25.0%
12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0	433,000	960,816	527,816	54.9%
13		전출금(장애인이용 및 수용시설 수도요금 감면)	121,820	121,820	121,820	28,480	23.3%
14	장애인 자립지원과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사업	213,420	213,420	213,420	84,150	39.4%
15	자활지원과	국고보조금 반환	0	915	915	915	100.0%

① 안심소득 시범사업 추진체계 구축 운영

- 안심소득 시범사업 추진체계 구축 운영은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자문단 운영 및 정책토론회 개최를 위해 편성된 사업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표> '23년 안심소득 시범사업 추진체계 구축 사업 산출내역

통계목	금액	산출내역
사무관리비	329,600천원	· 연구자문단 운영 58,200천원 · 정책홍보 256,400천원 · 연구관리비 15,000천원
시책업무추진비	5,000천원	

- '23년 결산 결과 해당 사업은 33%(1억 1,045만원)의 불용률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 집행기관에서는 이에 대한 사유로 정책홍보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전문 학회와 연계 개최해 관련 정책홍보비를 절감하고, 연구자문단 및 소득보장자문단의 회의참석 저조에 따른 참석수당 지급의 저조를 들고 있음.
- 해당사업의 정책토론회는 다음과 같이 개최되었으며, 이 중 단순 발표 참여를 제외한 관련 정책토론회는 총 4회 개최, 5,038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남.

<표> '23년 안심소득 관련 정책토론회 사업 집행 현황

연번	일시	행사명	주요내용	소요예산	비고
1	23.2.2	한국경제학회 공동 학술대회	소득 양극화 및 복지사각 해소의 해법, 안심소득	12,860천원	
2	23.4.21	미래사회보장제도 방향 모색 토론회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미래사회보장제도	14,338천원	
3	23.6.14~ 6.15.	한국정책학회	지속가능한 미래사회를 위한 정책연구	537천원	안심소득추진 과정의 발표 참여로 국내여비만 별도 지출
4	23.8.24.	한국노동경제학회 공동 학술대회	안심소득 사범사업 시행 1년, 1차 중간조사 결과 및 향후 과제	10,924천원	
5	23.11.24.	한국국제경제학회 공동 학술대회	안심소득 사범사업 시행 1년, 타도시 소득실태와의 비교	12,265천원	

- 특히, 해당 예산은 상임위원회 예산심의과정에서 과도한 홍보비 편성이 지적되어 당초 예산 3억 4,620만원에서 1억 1,600만원이 감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불용률을 보이고 있음.

- 안심소득 사업은 서울시가 주도하는 새로운 형태의 소득보장 시범체계 인만큼 정책토론회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향후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할 수 있으나, 해당 사업의 결산 결과를 봤을 때 예산 편성시 정책토론회의 규모, 횟수, 방법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② 노숙인 등 일자리 지원

- 해당 사업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9)에 근거하여 노숙인 시설 이용·입소자, 쪽방주민, 주거지원 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공공일자리, 민간일자리, 공동작업장 등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임. 각각의 일자리 사업 내용과 실적은 다음과 같음.

<표> 노숙인 지원 일자리 구분

구분	지원내용
공동작업장	· 노숙인, 쪽방주민 등에게 일하는 습관 형성을 제공하는 일자리 : 쇼핑백, 장난감 조립, 양말인형 등 소품제작
공공일자리	· 노동능력 미약자의 노동의욕과 자존감을 높이는 기초생계형 일자리(반일제) : 환경정비, 급식보조, 당직 및 경비보조 등 · 민간일자리 연계의 전단계로 자립 및 지역사회복귀를 돕는 일자리(전일제) : 재활용품 분류, 병원 업무보조, 카페운영 등
민간일자리	· 지속가능한 맞춤형 민간일자리 제공으로 자립기회 제공

- 9)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고용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 등의 고용을 지원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지원, 취업알선, 직업능력개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 등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일자리 제공 등 자활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자활지원사업을 실시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노숙인 등에 대한 고용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 노숙인 일자리 제공 '23년 추진 실적

(단위 : 개, 명)

구분	계	공공일자리			공동작업장	민간일자리
		소계	반일제	전일제		
'23년 목표	2,565	810	550	260	380	1,375
'23년 실적	1,980	833	561	272	293	854

- 해당 사업은 '23년도 전체 예산 152억 3천 7백만원 가운데 16억 3천 7백만원 (10.7%)를 불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또한, 당초 목표 2,565개 가운데 1,980개의 일자리를 제공해, 전체 달성률이 77,2%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남.
 - '22년도 제공실적은 2,319건으로 2년 연속 제공실적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집행기관에서는 이에 대해 노숙인 수의 지속적 감소와 함께 노숙인 참여자의 건강문제, 민간 일자리 취업 등으로 중도포기가 발생하는 것 등을 사업 실적 미비의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음.
 - 집행기관에서는 사업 중도포기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통계자료는 별도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해당사업의 최근 결산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이후 지속적으로 10%대의 불용률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노숙인 등 일자리 지원 2020~2022년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최종예산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집행잔액
2020	10,291,109	10,291,109	10,225,553 (99.4%)	65,556
2021	11,973,394	11,973,394	10,819,436 (90.4%)	1,153,958
2022	12,689,774	12,689,774	11,572,870 (91.2%)	1,116,904

- 서울연구원의 연구결과¹⁰⁾에 따르면 서울시 노숙인 수는 점차 줄어들고 있으나, 시설 입·퇴소를 반복하는 회전문 현상과 만성화가 빈번하여 노숙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다양해지는 형태를 보이고 있음.
- 본 사업의 경우 전체적인 노숙인 수의 감소 등의 영향으로 사업 집행률이 낮아지는 불가피한 측면이 존재함. 그러나 노숙인의 자립을 위해서는 일자리를 통한 경제적 자립이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 단순 일자리 제공 건수를 늘리는 것 외에 사업방식의 다양화를 통해 집행률 제고를 위한 사업방향 개편 등도 고려해볼 측면이 있다 하겠음.
 - 현재 본 사업에서는 단순 일자리 제공 외에 신용회복 지원 1:1 개인 상담 동행서비스, 노숙인 직무관련 맞춤형 직업교육 프로그램 지원 (정서지지 프로그램 포함) 등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은 노숙인들의 자존감을 고취하고 경제적인 자활·자립의 계기를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10) 윤민석 외(2021). 서울시 노숙인정책 진단과 발전방안. 서울연구원.

마) 예비비 사용

- 예비비 제도는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위한 제도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재정지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제도임. 지방재정법 제43조¹¹⁾에서는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복지정책실에서는 23년도에 예비비로 총 39건, 111억 5천7백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나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표> 2023 회계연도 복지정책실 예비비 사용내역

(단위: 천원)

연번	과 목			지출결정액	지출액	예비비지출사유
	조직	세부사업	통계목			
1	어르신복지과	시립장사시설 위탁 운영	시설비	228,186	228,186	토지 인도소송 강제조정 결정 확정에 따른 결정금 지급
2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취약계층, 지방재원)	4,938,337	4,165,074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금 확보
3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활동지원가산급여	차차단체경상보조금	3,431,383	3,431,383	활동지원가산급여 국비 추가 교부에 따른 매칭 시비 확보
4	안심돌봄복지과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금	9,000	9,000	한화 대비 취약계층 이용 시설 난방비 특별 지원
5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차차단체경상보조금	571,500	571,500	
6	어르신복지과	어르신주거복지시설 운영(양로)(전환사업)	민간위탁금	27,000	27,000	
7		어르신주거복지시설 운영(양로)(전환사업)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27,000	27,000	
8		어르신의료복지시설 운영(요양)	민간위탁금	225,000	225,000	
9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금	162,000	162,000	

- 11)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연 번	과 목			지출결정 액	지출액	예비비지출 사 출 유
	조 직	세부사업	통 계 목			
10	장애인복지정책과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사회복지사업보조	7,500	7,500	
11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자치단체경상보조금	42,000	42,000	
12		사니어클럽 운영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57,000	57,000	
13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	사회복지시설법정운 영비보조	146,700	92,762	
14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운영	민간위탁금	3,000	3,000	
15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운영	사회복지시설법정운 영비보조	55,500	55,067	
16		서울시보조기기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3,600	3,600	
17		인권침해 장애인 쉼터운영(사비)	민간위탁금	900	900	
18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자치단체경상보조금	72,000	72,000	
19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운영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00	3,000		
20	장애인지립지원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민간위탁금	9,600	9,600	
21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사회복지시설법정운 영비보조	199,800	199,800	
22		장애인체육시설 운영	민간위탁금	15,000	15,000	
23		장애인체육시설 운영	사회복지사업보조	51,000	51,000	
24		장애인체육시설 운영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3,500	13,500	
25		장애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금	73,500	73,500	
26		장애인복지관 운영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16,500	316,500	
27		장애인수어통역센터 운영	사회복지시설법정운 영비보조	20,100	19,200	
28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운영	사회복지시설법정운 영비보조	34,500	34,500	
29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운영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8,000	18,000	
30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사회복지시설법정운 영비보조	98,100	86,400	
31	자 활 지 원 과	거리노숙인 보호	민간위탁금	30,000	30,000	
32		노숙인 일시보호시설 운영	사회복지사업보조	24,000	24,000	
33		쪽방거주자 생활안정지원 (쪽방상담소 운영 지원)	민간위탁금	15,000	15,000	

연 번	과 목			지출결정 액	지출액	예비비지출 사 유
	조 직	세부사업	통 계 목			
34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	민간위탁금	21,000	21,000	
35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	사회복지사업보조	108,000	108,000	
36		노숙인 재활시설 운영(전환사업)	민간위탁금	18,000	18,000	
37		노숙인 재활시설 운영(전환사업)	사회복지사업보조	42,000	42,000	
38		노숙인 요양시설 운영(전환사업)	민간위탁금	30,000	30,000	
39		노숙인 요양시설 운영(전환사업)	사회복지사업보조	9,000	9,000	

○ 복지정책실 예비비의 주된 사용 목적은 지방이양 사회복지시설 및 기타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한파에 대비해 난방비를 지원한 것으로, 23개 유형 총 764개소를 대상으로 3개월 분의 난방비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남.(총 2,559,300천원)

- 난방비를 지원하되, 시설 면적에 따라 월 최저 1백만원(1,500㎡ 미만 이용시설)에서 최대 10백만원(6,500㎡ 이상 이용시설)으로 차등 지원을 실시하였음.

3 기금 운영 관련

가. 기금운용 결산 총괄

○ 복지정책실에서는 사회복지기금 3개 계정(노인복지계정, 장애인복지계정, 자활계정)과 재난관리기금 1개 계정(구호계정)을 운용하고 있으며, 23년도말 기금 현재액은 1,855억 7천9백만원으로 직전 회계연도

(1,737억 8천9백만원)보다 117억 9천만원 증가한 것임.

<표> 2023년도 복지정책실 기금 조성 총괄

(단위 : 백만원)

기금명	전년도말 현재액 ①	2023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⑤ = ① + ②
		계 ② = ③ - ④	조성액 ③	사용액 ④	
계	173,788	11,790	217,826	206,036	185,579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12,474	△429	638	1,067	12,045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23,982	△1,410	3,483	4,894	22,572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8,307	1,547	2,458	911	9,853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129,025	12,083	211,247	199,164	141,108

- 기금은 그 운용에 있어서 의회의 심의와 의결을 받고 집행해야 하는 일반예산과 달리 집행부의 자율성이 폭넓게 인정되고, 집행부의 의지에 따라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 유연한 사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음.
- 반면 예산의 변경사용이 용이하여 예산집행에의 투명성과 목적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금의 목적사업이 여러 개인 관계로 정치적인 우선순위에 의하여 기금의 사용이 결정되는 등에 대한 위험성이 존재함.

나.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은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제5조12)에 따라 운영 중이며, 2023년 연도발 조성액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기금의 연도말 조성액 현황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단위 : 백만원)

구분	주요항목	2023년도	2022년도	증 감	사유(상세히)
전년도까지 조성잔액 ㉠	전년도이월금	12,045	12,474	△429	
	예치금잔액	555	984	△429	예치금 활용 스마트돌봄 시범사업 등 신규사업 추진
	예탁금잔액	11,490	11,490	0	
운용수입	합계	1,622	1,789	△167	
당해 연도 조성 ㉡	소 계	638	451	187	
	전입금	0	0	0	
	보조금	0	0	0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0	0	0	
	예수금	0	0	0	
	이자수입	526	352	174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증대(이자율 상승)

12)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제5조(노인복지계정) ① 노인복지계정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 일반회계로부터의 기금전출금
 2. 노인복지계정의 자금운용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 ② 노인복지계정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노인의 사회참여활동 및 여가활동 지원
 2. 노인단체 지도·육성 및 건전한 시민운동 지원
 3. 노인문제 및 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
 4. 노인 관련 학술대회 등 행사 지원
 5. 노인 관련 단체 및 시설종사자 교육
 6. 저소득노인의 자활 지원
 7. 노인복지계정의 자금관리 운용에 필요한 경비
 8. 노인교육사업
 9. 민간의 창의적인 노인복지사업 발굴지원
 10. 그 밖에 시장이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분	주요항목	2023년도	2022년도	증 감	사유(상세히)
	기타수입	112	99	13	어르신일자리 사업장 용자지원 자금 회수
	예탁금원금회수	0	0	0	예탁금원금 미회수
	예치금회수	984	1,337	△353	2022회계연도 결산 결과 반영하여 예치금 회수액 조정
운용지출	합계	1,622	1,789	△167	
당해 연도 사용 ㉔	소 계	1,067	804	263	
	비용자성사업비(고유목적)	1,065	792	273	어르신 주거지원 (재계약 시 임차료 동결 등 소요비용 감소) 및 어르신 일자리 사업장 지원 공모사업 등 집행잔액 발생
	용자성사업비	0	10	△10	어르신 일자리 사업장 지원 사업변경(용자성→비용자성)
	기본경비	2	2	0	
	차입금원리금상환	0	0	0	
	예수금원리금상환	0	0	0	
	기타지출	0	0	0	
	예탁금	0	0	0	
	예치금	555	984	△429	예치금 활용 스마트돌봄 시범사업 등 신규사업 추진
당해연도 현재액 ㉕+㉖-㉗	조성현재액	12,045	12,474	△429	
	예치금 (사고이월포함)	555	984	△429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액 조정
	예탁금	11,490	11,490	0	

- '23 회계연도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에서는 총 7개의 목적 사업을 운용하였으며, 전체 집행률은 80.7%로 나타나고 있음.

<표>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지출결산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지출계획액		지출액 ㉞	지출잔액 ㉞-㉠	집행률 ㉞/㉠	비 고
	당 초	최 종 ㉠				
계	1,738,987	1,845,474	1,622,117	219,357	87.9%	
7개 목적사업비 소계	305,800	1,318,800	1,064,629	250,171	80.7%	
어르신 사회참여 활동 및 여가지원	140,000	1,153,000	948,000	205,000	82.2%	
어르신 정보화 교육	40,000	40,000	40,000	-	100.0%	
디지털 돌봄 역량 강화 추진	-	300,000	215,000	85,000	71.7%	
스마트 노인복지관 조성	-	450,000	420,000	30,000	93.3%	
스마트장비 연계 재가어르신 복약·정서 지원	-	33,000	33,000	-	100.0%	
어르신일자리 사업장 운영 지원	100,000	330,000	240,000	90,000	72.7%	
어르신관련 단체 및 시설종사자 교육	97,000	97,000	93,000	4,000	95.9%	
시설종사자 역량강화	97,000	97,000	93,000	4,000	95.9%	
저소득 어르신의 자활 지원	68,800	68,800	23,629	45,171	34.3%	
어르신 주거지원	68,800	68,800	23,629	45,171	34.3%	
예 치 금	1,430,187	523,674	555,488	31,814	106.1%	
기 본 경 비	3,000	3,000	2,000	1,000	66.7%	

- 디지털 돌봄역량강화 사업은 친환경 전기버스를 개조하여 디지털 돌봄 체험 공간을 구축해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이나 버스 개조를 위한 친환경 차량량 구매 과정에서 사업비가 절감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24년에는 해당 사업의 추진 계획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다.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 사회복지기금 중 장애인복지계정은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제6조13) 에 따라 운영 중이며, 2023년 연도발 조성액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기금의 연도말 조성액 현황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단위 : 백만원)

구분	주요항목	2023년도	2022년도	증 감	사유(상세히)
전년도까지 조성잔액 ㉠	전년도이월금	22,572	23,982	△1,410	
	예치금잔액	8,172	9,582	△1,410	결산에 따른 예치금 변동
	예탁금잔액	14,400	14,400	0	
운용수입	합계	16,548	15,432	△156	
당해 연도 조성 ㉡	소 계	3,483	2,824	659	
	전입금	0	0	0	
	보조금	0	0	0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2,466	2,240	226	전세보증금 지원사업 기간 만료 가구 증가에 따른 융자금회수액 증가 (기본2년, 최장6년)
	예수금	0	0	0	
	이자수입	1,003	584	419	공금예금 이자율 변동
	기타수입	14	0	14	비용자성사업 장애인단체 주제공모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수입 발생
	예탁금원금회수	0	0	0	
	예치금회수	9,582	9,784	△202	전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 변동
	운용지출	합계	13,066	12,608	458
당해 연도	소 계	4,894	3,026	1,868	

13)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제6조(장애인복지계정) ① 장애인복지계정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 일반회계로부터의 기금전출금
 2. 장애인복지계정의 자금운용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 ② 장애인복지계정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장애인 사회참여활동 및 여가활동 지원
 2. 장애인단체의 지도·육성 및 건전한 시민운동 지원
 3. 장애인 문제 및 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
 4. 장애인 관련 학술대회 등 행사 지원
 5. 장애인 관련 단체 및 시설종사자 교육
 6. 저소득 장애인의 자활 지원
 7. 장애인복지계정의 자금관리 운용에 필요한 경비
 8. 장애인의 교육 및 직업훈련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분	주요항목	2023년도	2022년도	증 감	사유(상세히)
사용 ㉔	비용자성사업비(고유목적)	0	700	△700	비용자성사업 장애인단체 주제공모사업을 일반회계 사업으로 이관
	용자성사업비	4,885	2,303	2,582	전세주택 보증금 지원사업 규모 증가('22 4,800백만원 →'23 7,400백만원) 및 지원 기준 변경(2인 이하 가구 170백만원 → 190백만원 이내, 3인 이상 가구 180백만원 → 200백만원)에 따른 집행액 증가
	기본경비	9	23	△14	전세주택 권리분석 수수료 감소 및 심의 횟수 감소
	차입금원리금상환	0	0	0	
	예수금원리금상환	0	0	0	
	기타지출	0	0	0	
	예탁금	0	0	0	
	예치금	8,172	9,582	△1,410	
당해연도 현재액 ㉑+㉒-㉔	조정현재액	22,572	23,982	△1,410	
	예치금 (사고이월포함)	8,172	9,582	△1,410	사업추진에 따른 예치금 감소
	예탁금	14,400	14,400	0	

- 현재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에서는 용자사업인 장애인전세주택 보증금 지원사업만을 진행중에 있으며, '23년도 해당사업 예산은 7,400백만원이었으나, 실집행액은 4,885백만원으로 집행률은 66%로 나타나고 있음.

<표> 장애인전세주택 보증금 지원사업 '23년도 집행내역

구 분	지원현황 (누적)	'23년 지원 목표	'23년 지원실적		
			계	신규계약	재계약
가구수	84	43	29	26	3
지원액	12,397	7,400	4,885	4,689	196

- 해당 사업은 '23년도 38가구 모집에 총 88가구가 지원해 현장에서의 수요는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나 지원금액 외 초과분 부담, 적합한 시설을 갖춘 주택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지속적으로 지원을 포기하는 가구가 발생해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라.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 복지정책실 소관 사회복지기금 중 자활계정은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제8조¹⁴)에 따라 운영 중이며, 2023년도 연도말 조성액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기금의 연도말 조성액 현황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단위 : 백만원)

구분	주요항목	2023년도	2022년도	증 감	사유(상세허)
전년도까지 조성잔액 ①	전년도이월금	8,306	7,828	478	전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 변동
	예치금잔액	3,886	3,408	478	
	예탁금잔액	4,420	4,420	0	
운용수입	합계	6,344	4,673	1,671	
당해	소 계	2,458	1,265	1,193	

14)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제8조(자활계정) ① 자활계정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 일반회계로부터의 기금전출금
2. 국고보조금
3. 시 이외의 자의 출연금
4.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5.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익금
6. 자활노동(「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자활근로를 말한다)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7. 자활계정의 자금운용 수익금
- ② 자활계정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자 차액의 보전
 2.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급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3.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산형성 지원
 4.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
 5. 법 제18조의6에 따른 수급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7.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 가.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또는 기금에서 대여받는 채무
 - 나. 수급자가 대여받는 생업자금 채무
 8. 광역단위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
 9. 광역자활센터 및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
 10.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취업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운영 지원
 11.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연찬회 등 사업 지원
 12. 자활사업 연구·개발·평가 등을 위한 비용
 13. 저소득 시민 자활사업 관련 단체 지도·육성 및 건전한 시민운동 지원
 14. 그 밖에 시장이 저소득시민의 자활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해당 연도 기금 지출의 100분의 20 이하 범위로 한정한다)

구분	주요항목	2023년도	2022년도	증 감	사유(상세허)
연도 조성 ⑥	전입금	0	0	0	
	보조금	0	0	0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2,060	971	1,089	융자금 환수액 증가(추세) : 매입임대 32호 559백만원 → 84호 1,765백만원
	예수금	0	0	0	
	이자수입	388	222	166	15억 정기예금 추가가입 등에 따른 이자 증가
	기타수입	10	72	△62	서울광역자활센터 집행잔액 변동
	예탁금원금회수	0	0	0	
	예치금회수	3,886	3,408	478	전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 변동
운용지출	합계	6,344	4,673	1,671	
당해 연도 사용 ⑦	소 계	911	787	124	
	비용자성사업비 (고유목적)	604	597	7	서울광역자활센터 자활기금사업 예산 증가
	융자성사업비	305	187	118	전세점포 임대자금 융자신청 증가 : 6개소 187백만원 →9개소 305백만원
	기본경비	2	3	△1	자활기금심의위원 수당 실집행 감소
	차입금원리금상환	0	0	0	
	예수금원리금상환	0	0	0	
	기타지출	0	0	0	
	예탁금	0	0	0	
	예치금	5,433	3,886	1,547	사업추진에 따른 예치금 증가
당해연도 현재액 ⑧+⑨-⑦	조성현재액	9,853	8,306	1,547	
	예치금 (사고이월포함)	5,433	3,886	1,547	사업추진에 따른 예치금 증가
	예탁금	4,420	4,420	0	

- '23 회계연도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은 총 63억 4,472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비용자성 사업 5개의 집행률은 99.7%, 융자성 사업 1개의 집행률은 91%로 나타나고 있음.

<표> '23년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지출 결산

(단위: 천원)

구 분	2023년 예산		지출액 ㉠	집행률% ㉡ = ㉠/㉢	비고	
	당초	변경㉢				
총 계	5,040,609	6,302,094	6,344,727	100.7		
비용 자성 사업 비 (서울 광역 자활 센터)	소 계	605,819	605,819	604,002	99.7	
	자활종합경영 지원사업	70,000	70,000	69,880	99.8	경영컨설팅, 시설장비 지원
	자활교육훈련	90,650	90,650	89,614	98.9	참여자 교육 훈련 실시
	광역자활사업 육성 및 지원	332,169	332,169	331,868	99.9	서울형자활사 업추진수당 지급
	자활유통활성 화	46,000	46,000	46,000	100.0	공공장터 추진, 관로개척 등
	자활조사, 홍보 및 연대대사업	67,000	67,000	66,640	99.5	현황조사, 책자 발간 등
융자 성 사업 비	전세점포 임대자금 융자지원	265,000	335,000	305,000	91.0	임차보증금 지원 (점포 9곳)
기본경비	5,000	5,000	2,225	44.5		
예치금	4,164,790	5,356,275	5,433,500	101.4	'23년말 시금고잔액 (결산액 반영)	

마.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은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조15)에 의해 설치되었으며, 재해 발생 시 신속한 응급구호를 통한 이재민 보호가 그 목적임.

<표> 기금의 연도말 조성액 현황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단위 : 백만원)

구분	주요항목	2023년도	2022년도	증 감	사유(상세히)
전년도까지 조성잔액 ㉠	전년도이월금	129,025	99,098	29,927	
	예치금잔액	129,025	99,098	29,927	
	예탁금잔액	0	0	0	
운용수입	합계	340,272	841,994	△501,722	
	소 계	211,246	742,896	△531,650	
당해 연도 조성 ㉡	전입금	52,548	317,597	△265,049	2022년 코로나19 및 대규모 풍수해재난 대응을 위한 예산 추가편성사례와 달리 2023년은 코로나 진정 및 풍수해 피해 감소세로 법정 최저적립금만 전입조치함
	보조금	10,111	411,814	△401,703	2022년 국고보조사업인 코로나19생활지원비 지원, 집중호우 침수피해 재난지원금,이태원참사 생활안정지원금 교부사업 등 일회성 보조사업 종료로 인한 국비수입 감소
	융자금회수(이자포함)	0	0	0	
	예수금	0	0	0	
	이자수입	5,449	2,064	3,385	코로나19이후 물가상승세 조정에 따른 금리인상 영향
	기타수입	143,138	11,421	131,717	전년(2022) 보조사업 종료로 인한 자치구-市 반환금수입 증가
	예탁금원금회수	0	0	0	
	예치금회수	129,025	99,098	29,927	
운용지출	합계	340,272	841,994	△501,722	
당해 연도	소 계	199,164	712,969	△513,805	

15)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조(설치)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각 목의 재난 예방과 발생시의 신속한 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구분	주요항목	2023년도	2022년도	증 감	사유(상세히)
사용 ㉔	비용자성사업비(고유 목적)	78,323	711,691	△633,368	2022년 코로나19생활지원비 지원, 방역물품 지원, 집중호우 침수피해 재난지원금, 이태원사고 생활안정지원금 사업 종료로 인한 세출수요 감소
	용자성사업비	0	0	0	
	기본경비	205	0	205	
	차입금원리금상환	0	0	0	
	예수금원리금상환	0	0	0	
	기타지출	0	0	0	
	예탁금	120,636	1,278	119,358	전년도 국고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市 - 國)편성 및 집행
	예치금	0	0	0	
당해연도 현재액 ㉑+㉒-㉔	조성현재액	141,108	129,025	12,083	전년도에 비하여 세입규모보다 세출수요가 큰 폭으로 줄어(코로나19진정 및 풍수해피해감소 영향)예치금 증가
	예치금 (사고이월포함)	141,108	129,025	12,083	
	예탁금	141,108	129,025	12,083	세입세출결산결과 반영

-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23년도 집행액은 3,402억 7천2백만원으로 세부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음. 지출 사업액은 이재민 재해보상(514억 4천2백만원), 생활지원비 지원(164억 1천7백만원), 의료 및 구호비 지원(137억 6천6백만원), 무더위쉼터 냉방비지원(44억 9천7백만원)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23년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집행액

(단위 : 백만원 / '24. 1. 20. 기준)

세부사업	예산액	집행액
계	269,018	340,272
이재민 재해보상	51,442	47,587
의료 및 구호비 지원	13,766	10,832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	4,497	3,716
생활지원비 지원	16,417	16,393
여유자금 예치	62,260	141,108
반환금 및 기타	120,636	120,636

바. 기금운영에 대한 검토 의견

- 2023회계연도 복지정책실 기금사업 중 고유목적사업은 16개로, 당초 지출계획현액 880억 4천7백만원 중 801억 9천7백만원을 지출하고, 78억 5천만원(지출계획현액 대비 8.9%)이 미집행되었음.

<표> 기금별 고유목적사업 집행 총괄표

(단위 : 백만원, %)

기금	사업수	지출계획 현액	지출액	다음년도 이월액	미집행액	미집행률	
합계	16	88,047	80,197	-	7,850	8.9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7	1,319	1,065	-	254	19.2
	자활계정	5	606	604	-	2	0.3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4	86,122	78,528	-	7,594	8.8

- 일반·특별회계 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세출 예산의 경비는 다음 연도에 사용할 수 없으나, 기금의 경우에는 일정 시

점의 재산상태를 나타내는 “조성”과 1년간의 운영상황을 나타내는 “운영”으로 구분하고 있고, 기금운영 결과 사업비에서 발생한 불용액을 예치금으로 적립하여 해당 기금의 사업비로 다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용액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둔감한 재정환경을 가지고 있음.

- 기금은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재원의 안정화로 사업의 지속성이 보장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반면 기금이 남설되거나 목적 및 계획대로 운영되지 못할 경우 오히려 재정운영의 건전성, 효율성, 투명성 등을 저해할 수 있음.¹⁶⁾
- 기금 지출사업예산 편성시에 당 회계연도 내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야 하며 지출사업예산 이월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비효율적 기금운영을 지양해야 할 것이며, 예산수요를 보다 실질적으로 산정하여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사례를 감소시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16) 서정섭(2019),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영 평가와 제도개선 방향,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89-111